

小賣商 및 小賣市場近代化方向研究

吳 相 洛

<目 次>

I. 流通近代化의 一環으로서의 市場性格 및 構造의 改編	組織의 必要性
II. 市場의 概念	IX. 都賣市場의 近代化方案
III. 在來市場 과 市場規則	X.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案의 骨子
IV. 現行市場法의 矛盾點	XI.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案의 骨子
V.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의 方向	法 案:
VI. 商店街의 育成方案	(1)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案)
VII. 協同連鎖店의 育成方案	(2)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案)
VIII.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I. 流通近代化의 一環으로서의 市場性格 및 構造의 改編

정부에서는 1969년을 '流通近代化의 해'로 정하여 流通革命의 거대한事業에着手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經濟의 暗黑大陸이라고 하던 流通部門에 政府는 과감히近代化를 위한挑戰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곧 금년부터 '流通近代化 5個年計劃'의樹立에着手할 것이라 한다. 標語로서 내건 '流通近代化' 내지 '流通革命'이란 말은 오늘날 사람들에 따라서各種各樣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流通近代化란 말을 物資輸送의近代化·高度化의側面만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都賣商이나 小賣商의機構등 商去來面에 있어서의近代化를 연상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流通近代化의 一側面만을着眼한 것이며 잘못된理解라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한 이해라고도 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兩者를有機的으로高次元의世界에서統合한近代化내지變革을 뜻해야 할 것이다. 流通近代化는 먼저 流通設備의近代화와 流通機關의近代화로부터 시작하여 종국적으로는 流通을構成하는 모든要素의近代화로 즉「시스템」으로서의近代化로發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막대한外國援助와 政府의 강력한支援으로 生產工場은 제법大量으로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

658
Sept 1970
V.3
C.4

生産할 수 있게 되었고 產業部門에 따라서는 過剩生產의 現象마저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大量生產에 대응하는 大量販賣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터전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消費者에 흘러갈 水量은 제법 현대식 發動機가 달린 「펌프」로 大量으로 퍼울리게 되었는데 消費者에 그 물을 流通시킬 「파이프」가 매우 가늘고 구불어져 있고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러한 狀態下에서 流通革命이 일어난다면 奇蹟이다. 先進國에서도 生產面에서 먼저 革命이 일어난 후 뒤이어서 서서히 生產面보다 더욱 복잡한 流通面의 革命이進行되었던 것이다.

流通革命은 먼저 流通機關(都賣商, 小賣商)의近代化 즉 大規模로 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大量生產에 대응하는 大量販賣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大規模流通機關이 발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流通機構를 구성하는 「마아케팅」機關 즉 都賣商과 小賣商은 너무나 零細的이며 生產性이 낮다. 말하자면 原始的인 狀態로 그대로 放置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수가 많은 露店商이나 구멍가게가 그것을 立證한다. 先進國에서는 이미 20세기초에 資本主義 最初의 大量販賣機關인 百貨店의 開花期를 맞이하였고 그후 百貨店의 都心地中心의 虛點을 절터 1920年代에는 店舗의 地方分散化政策으로 連鎖點이 全盛期를 이루었다. 1930年代에 와서는 連鎖點을 얹누르고 「수퍼·마아켓트」가 등장하여 완전히 食料品「마아케팅」의 支配權을 掌握하였다. 1940年代에는 2次世界大戰으로 인하여 새로운 「마아케팅」機關의 발달을 보지 못하다가 2次大戰後 1950年代後半期부터는 割引店의 全盛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0年代에는 SSDDS(Self-Service Discount Department Store)와 「쇼핑·센터」가 「마아케팅」業界를 휩쓸고 있다. 이와 같이 「마아케팅」分野에서는 苛烈한 競爭에 승리하기 위하여 每 10년마다 새로운 形態의 現代的「마아케팅」機關이 登場하여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 小賣機關의 支配的인 形態는 가장 原始的인 露店과 雜貨店이다. 都市의 小賣機關은 아직 特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雜貨店이 대부분이고 農村에서 5일마다 開市되는 在來市場에는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露店制度가改善될 줄 모르고 그대로 維持되고 있다. 露店形態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東大門市場이나 南大門市場에도 그대로 存續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百年前에 시작된 百貨店이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連鎖店이나 「수퍼·마아케트」, 割引店같은 大量販賣機關은 이제야 겨우 窽이 틀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웃 나라 日本의 경우를 보면 현재 百貨店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고 있으며 店員없이 「셀프·서비스」制度로 運營되는 「수퍼·마아케트」는 勞動力不

足으로 허덕이고 있는 美國에서나 발달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종래의 觀念을 뒤엎고 人口過剩으로 골치를 앓는 日本이나 西歐諸國에서도 繁榮하고 있고, 計劃的「쇼핑·센타」(planned shopping center)는 美國과 같이 廣大한 駐車場이 필요한 나라에서나 必要한 것으로만 알았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日本에 導入되어 成功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小賣機關도 하루 속히 前近代的인 舊殼에서 脫皮하여야 할 것이다. 一國의 經濟가 단계적으로 어떤 類型的通則性을 가지고 발전한다면 우리도 大量生產이 軌道에 오르면 早晚間에 이 러한 大量販賣機關이 필요할 것은 틀림없다.

이와 같이 流通革命은 大量消費의 前提下에 小賣機關의 大規模化에 의한 販賣革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流通經路를 포함한 流通體系全體가 혁신되어야 하는 것이다.

流通近代化에 着手할 때는 바로 이제 우리눈 앞에 到來한 것이다. 이와 같이 流通革命의 첫 騎手로서의 大量販賣機關의 育成은 현재 우리나라의 在來市場의 畸型的 成長의 所產인 大都市의 超巨大 「맘모스」 市場 즉 서울의 東大門市場 南大門市場等, 釜山의 國際市場等, 大邱의 西門市場等이 存在하는限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原始的 露店 小賣市場의 內延의 外延的 成長體인 이 러한 超巨大 在來市場에서는 定札制가 실시되어 있지 않아 消費者와 販賣者와의 紛糾과 승강이로 그때 그때 商品의 價格이 決定되므로 때로는 消費者에게 바가지도 싸우고 때로는 原價以下로 「덤핑」을 하고 있고 店舖商人數와 맞먹는 數爻의 露店商人들은 脱稅를 恒茶飯事로 일삼고 있고 市場內에는 近代施設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만 原始的 露店市場의 延長으로서의 마루바닥에 商品을 露積하여 놓고 앉아서 팔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市場內의 都賣商과 小賣商의 分化는 이루어지지 않고 兩者가 서로 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에 費用안들이고 脱稅를 하니 商品값이 百貨店이나, 獨立小賣店인 限定品種店(limited line store)이나, 專門店(speciality store)의 商品값보다 쌀 수 밖에 없다. 百貨店이나 其他 獨立小賣店은 施設도 화려하게 해야하고 脱稅도 不可能하니 商品 價格面에서 이들 超巨大在來市場에 대항할 길이 없는 것이다.

百貨店 連鎖店 「수퍼·마아케트」등 近代的 大規模 「마아케팅」 機關의 육성은 이러한 超巨大在來市場의 近代의 「쇼핑·센타」에로의 再開着이 있은 후에 비로소 可能하다. 超巨大在來市場이 「쇼핑·센타」化하여 모든 商人們은 現代的 施設을 갖춘 깨끗한 建物속에서 商業을 營爲하고 露店商은 一掃되어 현재의 복잡하고 不潔한 市場內의 道路가 청결한 遊步場같이 되었을 때 이 「쇼핑·센타」內의 이들 小賣商店과 外部의 百貨店 기타 獨立小賣商

은 공정한 基盤위에서 정정 당당히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때에 비로서 百貨店, 連鎖店, 「수퍼·마아케트」등 近代的 大量販賣機關이 「쇼핑·센터」(從來의 在來市場)內에서도 成長해 나올 수 있고 都心部의 商街에서도 成長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流通近代化 내지 流通革命의 첫 段階는 먼저 우리나라 固有의 都市 在來市場의近代化作業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서 다른 모든 流通部門의近代화에 拍車를 가하게 되고 그 波及效果를 가져 올 것이다. 즉 '流通近代化는 먼저 市場의 現代化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現行『市場法』은 废止되고 새로운『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이 制定되어야 한다. 在來市場의 「쇼핑·센터」(商店街)化를 위해서는 在來市場의 露店市場의 性格을 拂拭하고 建物市場으로의 轉換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리고 消費者(國民)들로 하여금 市場이라 하면 在來市場을 聯想하지 말고 建物市場을 聯想指稱하도록 정부는 消費者教育을 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在來市場의 建物市場化는 지금까지의 脱稅行爲를 못하게 만들고 또한 建物施設維持費, 裝飾費에 문에 그것이 商品價格에 加算되어 필연적으로 物價를 上昇시킬 것이라는 疑懼心도 가질 수 있겠으나, 물론 이의 斷行初期에는多少 動搖가 있겠지만, 긴 눈으로 보아서 안정이 되면 從來보다 더욱 效率的인 經營合理화와 「마아케팅」活動의 科學化로 商品價格을 下落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 市場의 概念

露店市場의 概念으로부터 建物市場的概念으로 國民들의 思考方式을 轉換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市場의 概念에 대한 科學的 定義가 필요할 것이다.

市場(market)이란 價格形形成力이 작용하고 去來되는 財貨의 實體的 移動에 의해서 所有權의 交換이 이루어지는 어떤 범위(sphere)를 말한다.

一般的으로 市場은 具體的市場(concrete market)과 抽象的市場(abstract market)으로 나누어진다.

具體的市場이란 一定地域內의 特定財貨의 需給總體가 集約化되어 價格決定操作이 행하여지는 市場中心(market center) 혹은 具體的 施設로서 賣買雙方이 恒時 혹은 정기적으로集合하여 실제로 賣買去來를 행하는 일정한 場所 혹은 建物을 말한다. 이의 예로서는 東大門市場, 中央都賣市場, 證券去來所內의 株式市場등이 있다. 抽象的 市場이란 市場中心 즉 具體的 市場에서 결정된 特定財貨의 價格이 널리 通用되는 空間的, 時間的으로 制約된需要供給의 交涉範圍 즉 去來範圍을 말한다. 이의 예로서는 全國市場, 消費者市場, 勞動市場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市場은 이를 通過하는 商品의 종류에 따라서 財

貨(商品)市場, 勞動市場, 資本市場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本研究의 對象은 財貨市場 罷이다.

이러한 財貨市場은 「마이케팅」經路上에 位置하는 段階에 따라서 蒐集市場, 中繼市場, 分散市場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한 都賣市場, 小賣市場으로도 나누어 진다.

이상을 종합하여보면 市場의 概念은 다음 諸要素로 構成된다.

첫째로 사람의 集群을 들 수 있다. 具體的市場은 賣買當事者의 集合을 의미하고 抽象的市場은 賣買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總體的 關係를 意味한다. 換言하면 需要와 供給의 存在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地域的 限定이다. 이 要素에 의해서 일정한 場所 또는 建物을 의미하는 具體的市場과 需給關係의 總體를 意味하는 抽象的市場으로 區別된다. 그러나 市場을 抽象的으로 需給關係의 總體로 보는 경우에도 地域의 限定이 있다.

셋째로 時間的 限定이다. 具體的市場은 一定時間에 開市되고 抽象的市場은 持續的인 關係를 意味하나 여기에도 일정한 時間的 限定은 있다.

넷째로 組織인데 具體的市場은 各己 獨特한 組織을 가지고 抽象的市場의 組織은 當該商品의 配給組織 自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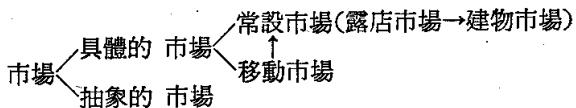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要素는 價格形成의 要素이다. 完全競爭(혹은 純粹競爭)이 행해질 때는 一定時에 있어서同一市場內에서의 同種同質의 商品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價格만이 成立한다. 이것을 一物一價의 法則 혹은 無差別의 法則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市場을 完全한 市場이라 한다. 이 價格形成要素와의 關聯下에 市場을 獨占市場, 不完全競爭市場 및 完全競爭市場(혹은 純粹競爭市場)으로 나눈다.

本研究에서 다루는 小賣市場이란 日用品의 小賣를 目적으로 하는 具體的市場이며 抽象的 意味의 消費者市場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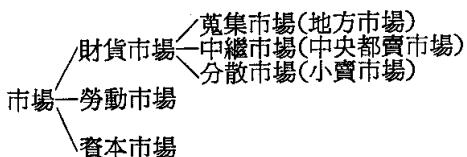
具體的市場으로서의 小賣市場은 常設市場과 移動市場으로 구별된다. 常設市場은 또한 ① 建物市場으로서 一定한 設備를 가지는 것과 ② 露店市場 또는 天幕市場으로 나누어 진다. 歷史的으로 보면 露店市場이 먼저 發達하였다. 우리 나라 固有의 在來市場인 5日市場, 夜市場, 巡回市場등이 그것이다. 이 露店市場이 漸進的으로 建物市場으로 發展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나 日本의 常設建物市場은 一種의 賃貸店舗制度를 취하고 있다. 小賣市場은 또한 設立主體가 地方公共團體나 私人이나에 따라 公設市場과 私設市場으로도 나누어 진다.

<市場의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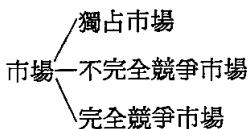
(1) 市場의 存在樣式에 따른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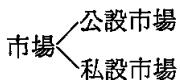
(2) 通過하는 商品의 種類 및 商品의 通過順序에 따른 分類



(3) 價格形成要素의 關聯下에 分類



(4) 設立主體에 따른 分類



III. 在來市場과 「市場規則」

1. 우리 나라의 二重的 市場構造

우리나라에서는 都市에서 多小 近代의인 商業機構가 爽트고 있으나 郡部以下の 農村에 가면 路傍이나 空地같은 市場에서 數千, 數萬名의 賣買者가 集合하여 雜踏한 가운데商品을 땅바닥에 벌려 놓고 驅亂스럽게 呼客을 하고 있는 中世의 市場去來態樣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韓國에는 都市의 比較的 近代의인 商業組織과 農村의 在來市場이 對蹠의으로 存在하고 있는 二重構造의 市場組織이 存在한다. 이러한 在來市場은 新羅時代나 高麗時代나 李朝時代나 거의 变함이 없으며 進化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

2. 在來市場의 趨移

오랜 歷史와 傳統속에 뿌리 박고 있는 우리 나라의 鄉市(5日市場)는 日帝下에서도 改善될 줄 모르고 繼續 그대로 存置되고 解放이 될 때까지 그 수는 오히려 增加되어 갔다. 1910년 合邦當時의 在來市場의 수는 980이었으나 1916년에 1,210으로 늘어났다. 다시 1922년 12월에는 全國의 市場數가 1,237에 달하였고 이들은 各郡에 대개 4,5개 내지 10

개 정도로 分散設置되어 있었다. 물론 그중에는 수백년 전부터 繼續된 것도 있었고 또 交通關係로 位置가 移動되고 名稱이 變更된 것도 있고 또한 新設된 것도 있었다.

그當時의 各道의 市場分布狀況을 보면 京畿道 104, 平安北道 58, 平安南道 120, 咸鏡北道 45, 咸鏡南道 90, 黃海道 117, 江原道 84, 忠清北道 52, 忠清南道 89, 全羅北道 64, 全羅南道 117, 慶尚北道 160, 慶尚南道 137, 그밖에 穀物現物市場 8, 證券現物市場 1 이 있었다. 1926년 調査에는 全國의 在來市場數가 1,301, 1930년에는 1,425, 1935년에는 1,494, 1936년에는 1507로 增加하였다. 이와같이 在來市場의 수는 日帝末期에 南北韓 合하여 약 1,500餘個었던 것이 解放後 오늘 날에는 南韓만도 1,097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表 1 參照)

3. 常設市場의 出現

이러한 在來市場(5日市場)은 日帝末期에 가서는 ‘毎日市場’ 즉 常設市場으로 화하는 傾向을 보이기 시작했다. 地方郡廳所在地 기타 主要한 邑面 등의 이른바 ‘城內市場’에는 隨設的인 것으로서 每日 朝夕 2시간씩 이른바 ‘저자’라는 시장이 서기 시작했고 그 중에 繁盛하는 것은 朝夕의 區分없이 終日 開市하기 시작했다. 農村部落에도 점차 常設店舗가 出現하기 시작하였으나 常設市場은 그리 많지 않았고 여전히 5日市場이 去來中心을 이루었다. 1938年現在의 村落市場 所在地에 散在한 店舗數의 總數는 74,493이었다. 이것은 一市場當 平均 54戶의 常設店舗가 存在하는 計算이 된다. 解放後의 오늘날 常設市場數는 公設이 154, 私設이 106으로 都合 260을 헤아리게 되었다. (表 1 參照)

<表 1> 市場現況表 1968년 12월 현재

區分 地域別	常設市場			定期在來市場			合計
	公設	私設	小計	公設	私設	小計	
서울 特別市	—	85	85	—	—	—	85
釜山 直轄市	21	6	27	1	—	1	28
京畿 道	18	8	26	111	—	111	137
忠北	17	—	17	91	—	91	104
忠南	7	2	9	135	—	135	144
全北	10	—	10	72	—	72	82
全南	17	2	19	149	—	149	168
慶北	24	1	25	239	—	239	264
慶南	16	—	16	193	—	193	209
江原	20	1	21	81	—	81	102
濟州	4	1	5	25	—	25	30
合計	154	106	260	1,097	—	1,097	,357

資料：商工部提供

以上의 概觀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1968년 12월 현재, 定期的 在來市場이 1,097 개, 常設市場이 260 개, 兩者를 합하여 모두 1,357 개의 市場이 存在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在來市場은 全部가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公設이고 私設은 하나도 없다. 常設市場은 154 개가 公設이고 106 개가 私設로 되어 있다. 이를 在來市場 및 常設市場의 地域別 分布는 다음 <表 1>과 같다. 서울特別市는 在來市場이 하나도 없고 市場法에 의해 서 開設된 常設의 私設市場이 85 개있을 뿐이다. 日帝時代에 이른바 示範 小賣市場으로 設立된 常設의 公設市場은 解放後 모두 拂下되고 현재는 하나도 없다.

4. 朝鮮總督府의 市場規則

日本이 韓國을 合併하자 그의 植民地 統治者들은 前近代的인 各種要因을 内包하는 在來의 鄉市를 그대로 放置 내지 減存하기로 政策을樹立하고 1914년 9월에 朝鮮總督府令 第136號로서 금일의 市場法의 母體가 된 『市場規則』을 制定하였다.

이 總督府令은 그 당시의 狀況을 檢討끝에 市場의 種類를 ① 在來市場 ② 食料品販賣市場 ③ 水產物 青果등의 糜市場의 3種으로 限定하고 水產物 糜市場과 『市場規則』發布前부터 個人 또는 會社가 經營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市場의 開設은 일절 公共團體(市) 또는 이에 準하는것(面)이 아니면 許可하지 않기로 規定하였다. 市場의 設置, 移轉, 廢止 기타 市場에 관한 重要한 事項은 모두 道長官의 權限에 맡기고 그밖의 市場의 組織 管理 監督에 관한 詳細한 規定을 만들었다. 1920년 4월에 總督府令 第38號로서 同規則의 一部를 改正하여 現物市場에 관한 規定을 만들고 有價證券과 穀物去來市場의 設置를 公認하게 되었다. 또한 物價騰貴에 대비하여 中流階級 以下者를 위해 市에서 公設市場을 設置하고 希望者中에서 選定된 商人們에게 貸與하여 日用品의 販賣業을 營爲케 하였다. 그들은 市場에 恒常 官吏를 派遣하여 그 實況을 監視하는 동시에 交通, 衛生, 不當暴利 기타 注意와 警告를 발하고 市場을 嚴格히 統制하였다. 日帝下의 在來市場이 減存되어 온 證左로서는 前記한 在來市場에 관한 統計數字의 增加趨勢를 보면 알 수 있다.

5. 在來市場이 減存된 理由

이러한 在來市場은 日帝末期에 들어서자 農民들의 自給自足의 物物交換的 性格에서 農會 金融組合등의 各種共同販賣事業의 強化에 의해 農民의 生產物販賣面에 있어서 工場 原料供給市場으로 화하는 傾向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동시에 다른 한면으로는 農家經濟의 貨幣經濟에로의 發展과 아울러 日本의 工業生產品의 販賣市場의 性格을 가지게 되었다. 地方農民의 生產物의 共同販賣 및 產業用品의 共同購入을 하는 農會 產業組合 및 金融組合등의 農村團體가 幫旋機關으로서 市場을 構成하게 되고 이들이 共販등의 場

所로서 市場을 利用하고 市場日(장날)을 共販日로 指定한 것은 原來 在來市場의 存在를 利用하려고 한 意圖下에서 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在來市場을 維持發展시키는 原因이 되었고 또한 各種의 農產物 및 副業生產物에 대한 檢查機關의 檢查場所가 거이 市場所在地에 設置되고 市場日에 檢查한 것이 在來市場을 繁昌하게 만든 結果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半自給自足的 農村經濟와 그 交換經濟機關인 在來市場制度가 政策的으로 未開狀態下에 繼續保存된 理由는 韓國의 在來市場이 低廉한 原料供給市場으로서 또한 日本의 產業資本에 의한 工業完製品의 販賣市場으로서 好適條件를 具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在來市場의 停滯的 殘存理由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理由로서는 國民所得의 低位性으로 인한 低購買力を 들 수 있다.

둘째理由로서는 生產力 특히 工業生產力의 未發達이다. 大量生產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大量去來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로는 商人資本의 零細性이다. 商人們은 固定資本이 많이 드는 常設店舗를 維持할 수 없을 程度로 零細하여서 資本이 많이 들지 않는 行商과 露店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넷째로는 都市化의 遲延이다. 古來로 農業國家로서 人口의 大部分이 農民이었으므로 村落市場에 依存하기 마련이었다.

다섯째로는 交通運輸手段 기타의 社會間接資本 形成의 落後性이다. 貨物集散은 주로 市場商人들이 直接 肉體的으로 擔當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일정한 行動半徑을 넘어 설수가 없었다.

여섯째로는 政府의 市場現代化에 대한 無計劃性을 들 수 있다. 李朝時代에는 官이 市場商人에 대해 荷斂誅求만을 일삼아 왔다. 즉 常設市場이 發達하지 못한 것은 都市에서는 官의 御用商人에게 地方에서는 在來市場 商人에게 官憲이 特權을 附與하여 一般商人들의 店舗去來를 妨害하였기 때문이다. 日帝時代에는 統治者들이 그들의 植民地 摧取政策上 在來市場을 故意의으로 未開狀態로 溫存하였다. 解放以後 오늘날까지는 政府가 生產爲主政策을 쓰고, 國內「마아케팅」問題에 대해서 放任政策을 써 왔다.

일곱째로는 在來市場의 多目的性때문이다. 市場은 다만 買賣를 目的으로 하는 經濟機關이었을 뿐만 아니고 간단한 加工修理 施設이나 酒店을 갖추어 社交, 娛樂, 遊興, 通信 등 單調로운 韓國의 農村社會生活에 多樣스러운 機能을 遂行하여 왔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市場에서는 各種의 犯罪行爲(詐欺, 嘘通, 賭博, 窃盜, 強盜等)도 함께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IV. 現行市場法의 矛盾點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現行『市場法』은 日帝下에 朝鮮總督府가 1914년에 『市場規則』으로 制定한 것을 基礎로 하여 5·16 革命直後 1961년에 制定된 것으로 現在 이 『市場法』은 時間의 經過와 함께 많은 矛盾點을 들어내고 있다.

現在의 市場法下에 露呈되고 있는 여러가지 矛盾點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市場法』第2條(定義)에 “本法에 市場이라 함은 다음 각號의 ①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① 闕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具備하고 區劃된 地域에서 매일 多數의 需要者와 供給者が 來集하여 物品의 賣買交換을 行하는 場所.

② 前號의 施設을 具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區劃된 地域에서 定期 또는 季節의으로 多數의 需要者와 供給者が 來集하여 物品의 賣買交換을 하는 場所.

③ 20人以上의 營業者가 闕令으로 정하는 施設을 具備한 同一한 建物內에서 物品의 賣買交換을 行하는 場所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第1號의 規定은 常設的인 露店小賣市場을 規制한 것이다. 第2號의 規定은 農村地方의 5日市場, 지금은 廢止되어 없어졌으나 옛날에 季節의으로 開市하던 藥市 같은 것을 規制한 것이다. 第3號의 規定은 都市의 常設的인 建物市場(日帝時代의 公設市場같은것)을 規制한 것이다. 이중 第1號와 第2號에 該當하는 形態의 市場은 莫然하게 市場을 “賣買交換을 하는 場所”라고만 規定하고 있어 歲月의 흐름과 함께 이 市場의 範圍가 擴大되어 어디까지가 市場인지 分揀할 수가 없게 되었다. 第3號에 該當하는 形態도 마찬가지로 許可받은 建物市場을 中心으로 四方으로 市場範圍가 擴散하여 그 建物周邊 一帶가 市場으로 化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市場開設許可를 받은 者는 貨貸料 其他에 대한 各種의 까다로운 規制를 받고 있으나 그 市場속에 包含된 周邊商人 乃지 建物主들은 市場法의 規制를 받지 않고 그 市場의 모든 恵澤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實例로서 東大門市場의 경우를 들어보자.

東大門市場은 垈地 3千坪위에 建物 2千 7百餘坪, 延建坪 7千坪으로 設立된 廣藏株式會社가 그 開設許可者로 되어 있다. 즉 市場許可區域은 廣藏株式會社 所有地 약 3千坪에 不過하지만 實際上은 東西로는 鐘路4街와 5街사이, 그리고 南北으로는 鐘路通과 清溪川사이를 통털어 東大門市場이라고 하고 있다. 몇 년전만 해도 廣藏株式會社區域外의 無許可市場을 南部市場이란 이름아래 市場許可를 받은 일이 있었으나 1962년에 이 許可

가 取消되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無許可地域이 許可地域보다 더 넓다. 그뿐만 아니라, 이 東大門市場을 中心으로 하여 東쪽은 東部市場(鍾路 5街와 6街사이), 西쪽은 清溪川商街, 南쪽은 平和市場과 芳山市場 北쪽은 鍾路通商街와 隣接하게 되어 어디까지가 東大門市場 인지 그 境界線을 分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非單 東大門市場뿐만 아니라 南大門市場을 비롯한 餘他市場에서도 共通點으로 볼 수 있는 現象이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物物交換을 하던 조그마 하던 옛날의 在來市場이 畸形的으로 發達하여 巨大한 「암보스」市場으로 화한 것이 오늘날의 서울의 東大門市場, 南大門市場, 釜山의 國際市場, 大邱의 西門市場 등 大都市의 市場들이다. 특히 東大門市場은 東部市場, 平和市場, 芳山市場, 清溪川商街, 鍾路 3街와 隣接하게 되어 超巨大市場을 形成하고 있다. 이러한 原始의 露店市場形態의 都市의 大市場들은 世界의 어느 나라에도 그 類例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畸形의 超巨大市場이 存在하는 限 百貨店, 連鎖店, 「수퍼마켓」, 割引店, SSDDS 등의 近代의 大規模小賣商이 발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近代의 大規模 小賣商을 育成할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異常肥大한 이 怪物을 먼저 退治해 냐해야 한다.

〔둘째〕로는 이러한 市場範圍의 擴大現象으로 나타나는 無秩序한 副作用이다.

예를 들면, 東大門市場에서의 貨貸料는坪當 1級地가 月 1千 2百원, 2級地가 1千원, 3級地가 8百원인데 場所가 좋은 곳은 店舗當 權利金이坪當 1百萬원이 넘고 있으며 場所가 좀 나쁜곳은 20萬원 程度로 다른 어떤 市場보다도 비싸다. 個人建物은坪當 8원의 保證金 3千 3百원의 貨金料를 徵收하고 있으나 市場許可를 받은 廣藏株式會社에 貨貸料를 市當局의 承認을 받아야 하므로 個人建物의 貨貸料에 比하면 30%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市場許可를 받지 않은 建物의 主인이 市場範圍의 擴大로 말미아 自然의 으로 市場속에 포함되어 더욱 有利하게 되는 矛盾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市場法』第3條에는 ① 地方自治團體 또는 ② 서울特別市場 또는 道知事が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法人이 아니면 市場을 開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結果 南大門市場의 경우를 보면 南大門市場株式會社가 1964년 許可坪數 5千3百餘坪위에 株式 5千株 資本金 250萬원 全額拂入으로 設立되었으나 實제로 1萬餘坪의 垈地위에 1,300餘店舗와 約 3千名(露店商包含)의 商人們이 商業에 종사하고 있다. 이 市場의 地價는坪當 1百萬원 이상 呼價하지만 地主가 거의 5百餘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러한 零細地主의 땅위에近代의 大規模施設이 갖추어질 리가 만무하다. 그리고 이 市場株式會社는 市場內에 垈地를 한坪도 갖지 않고 다만 一部地主들로 부터 使用承認만을 얻고 있다. 즉 法的으로는 市場開設者이지만 內容은 清掃와 官理費(店舗當 1개 20원, 露店

6 원)를 받아 市場內의 清掃, 防犯, 防火等의 保安業務만을 擔當하고 있다.

이와 같이 地主, 建物主, 市場開設者가 땐 사람으로 되어 있어 市場의 管理運營上의 權利義務關係가 복잡하다. 따라서 建物로 된 小賣市場은 반드시 建物主나 基地主가 市場開設者가 되어야 한다. 建物主나 基地主가 10인 以上의 零細 小賣商(指定商品販賣者)들에게 建物이나 基地를 賃貸할 때는 市場開設許可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露店 小賣市場은 반드시 地方公共團體가 開設者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自由黨治下에서와 같이 깡패들이 市場을 強占하여 橫暴를 부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넷째]로는 이러한 市場은 基地主와 建物主를 中心으로 여러 個單位(東大門市場의 경우는 15개 單位)로 分化되어 있어서 顧客의 便宜를 위해 商品의 種類別로 市場內部를 配列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顧客이 어떤 物件을 살려면 同一市場內라도 그 넓은 市場의 여러 單位建物마다 헤매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結果가 된다. 적어도 同一市場內에서는 消費者為主로 商品의 種類別로 商品이 진열되어야 할 것이다. 消費者들에게 쓸 때없는 精力과 時間의 浪費를 強要하며 이것은 國民經濟的 見地에서 볼 때 莫大한 損失이다.

[다섯째]로는 이러한 市場內部에 있어서의 露店商의 充滿現象이다. 非公式 統計에 의하면 市場法에 의해서 設立된 이들 市場內에는 거의 예외없이 店舗所有商人과 露店商人 및 雜商人의 수가 同數씩 存在하거나 혹은 店舗數보다 露店數가 많은 경우가 있다. (表 2 參照) 이러한 경우에는 市場이라기 보다 露店商街라고 하는 것이 適合할 것이다. 이를 露店을 여러 個씩 經營하는 店主는 店員들에게 月給制 아닌 賣上高比例 報酬制를 택하고 있어 店員들은 顧客들에게 대한 「서비스」같은 것은 전혀 意頭에 두지 않고 強賣만을 일삼고 있어 흔히 顧客들과 싸움이 벌어진다. 이를 露店商 때문에 火災가 나도 길이 막혀 消防車의 通行이 不可能하게 되고 市場內의 衛生的 環境을 나쁘게 만든다.

[여섯째]로는 이러한 在來市場이 無秩序하게 肥大해져서 形成된 怪物市場은 必然적으로 火魔를 招來케 한다.

다음에 内務部에서 集計한 市場火災統計(表 3)를 提示한다 火災原因을 모두가 無秩序한 市場條件에서 發生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市場內部가 複雜한 나머지 火因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被害額은 内務部治安國消防課統計에 의하면 1965年初부터 1968年未까지 28개의 市場火災件數에 計 1,172,193,100원을 記錄하고 있다.

大邱西門市場의 경우는 解放後 오늘날 現在까지 9回나 大火災를 입고 있다.(表 4 參照) 서울의 東大門市場과 南大門市場 釜山의 國際市場도 大邱에 西門市場에 못지 않은 火災記

<表 2>

서울特別市內主要市場實態調查

1968년 12월 현재

市場名	株主	設立資本金	坐地	店舗建坪	棟	店舗	非店舗		商人	備考
							露店	雜商人		
1. 黑石	名	원	坪	坪	個	個	臺	臺	人	
2. 新星商街	7	10,000,000	393.5	5,016.54	1	241				
3. 延曙	4	1,000,000	650	800	4	127	60		141	
4. 杏堂	3	500,000	572	542	3	58	18	18	62	
5. 驍梁津中央	9	500,000	1,750	1,800	11	120	10	5	133	
6. 大新西橋	1	5,000,000	797.53	227.5	3	51	53		88	
7. 中央			6,400	7,070		624	286	150	624	
8. 典農	8	1,000,000	1,330	1,450	2	143	50	30	130	
9. 新駍梁津	7	1,000,000	1,094	303	9	97		20	46	
10. 普光	3	1,000,000	411	322	4	49	26	15	60	
11. 九老	1	3,000,000	1,444	833	13	154	30		184	
12. 普門	95	900,000	1,281.5	1,662	1	149	50		149	
13. 上溪	7	2,000,000	2,300	780	4	77				未開場
14. 弘濟元一		1,000,000	1,256	259	3	66	130		52	
15. 楊坪	46	1,000,000	361.4	218.5		91				改築中
16. 永道	8	500,000	843	486.2	1	85	80	20	81	
17. 長位	3	1,500,000	408	155	1	61	20		75	
18. 江南	7		400.7	450	10	54	6			
19. 金南	124		507	420.08	7	68	26		68	
20. 藥水	10	1,000,000	458	452	1	61	30	20	82	
21. 青坡	20	10,000	153	320	3	20			15	
22. 奉天		3,450,000	557.4	313.6	7	87	42	32	87	
23. 碌磻	7	3,000,000	538	186	5	38	44		29	
24. 新村驛前	6	3,000,000	473.7	254.95	1	88	60	30	79	
25. 敦岩	134	10,000	1,380.8	1,296.9	1	295	50	200	134	
26. 通仁	22	50,000	234	134	4	22			23	
27. 龍山第一	7		575.9	439.0	6	101	14		101	
28. 往十里	7	10,000,000			1					未開場
29. 葛峴	7	500,000	612	532.32	5	134			67	
30. 清涼里	160	3,200,000	231.4	1,737	12	259	46		259	
31. 漢興	7	1,000,000			1	134	120	70	318	
32. 北阿峴	7	17,716,000	411	549	1	35	80		35	
33. 東大門	43	500,000	3,019.6	5,790	1	1,626			1,238	
34. 貞陵아리랑	5	2,000,000	402	335.87	8	69	33		68	
35. 新吉	89	2,400,000	608	312.9		89			53	改築中
36. 龍頭	7	5,000,000	382.4	190	3	45	40	25	110	
37. 三陽第一	8	8,000,000	815	440	13	91	62	20	273	
38. 三陽	7	500,000	2,071	409	15	103	56	100	96	
39. 모래내	6	500,000	340	150	6	50	40	35	111	
40. 等 섬	170		1,107	409.9	14	170			161	
41. 서울中部	62	14,000,000	4,938.98	9,600	20	932	300	100	608	

市 場 名	株主	設立資本金	坐 地	店舗建坪	棟	店舗	非 店 舗		商 人	備 考
							露 店	雜 商 人		
42. 阿 峴	名 9	원 2,000,000	坪 316	坪 113	個 1	個 24	臺	臺	人 14	
43. 新 村	5	6,800,000	1,737	1,953.7	1	411	250	300	290	
44. 平 和	30	500,000	2,794	7,457.67	2	2,054			547	
45. 翁 阿	74		7,047.26	687.59	2	17	68	13	98	
46. 水 蹤	4		1,288	754	16	147	92		147	
47. 靈 泉	24	603,500	307.4	429.08	12	54	14	20	54	
合 計	1,270	115,639.500	52,660	59,042	255	9,596	2,344	1,253	7,115	
平 均	30	2,965.115	1,170	1,312	6	209	68	60	169	

錄을 保有하고 있다. 이와 같은 市場의 大火災의 特徵은 密集해 있는 小賣商人들의 店舗로 인하여 한번 火災가 났다고 하면 大火災로 化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莫大한 損失全額을 市場現代化로 들릴 수 있다면 별색 市場의 現代化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表 3>

國內市場火災被害狀況(1965~1968)

(資料 : 治安局 消防課)

番號	火災發生日字	發生地域	被 害 額	備 考	番號	火災發生日字	發生地域	被 害 額	備 考
1	1965. 1. 6	안동시 안동시장	원 12,680,000		16	1967.10. 3	광주 계립시장	36,562,000	
2	" 3. 7	경북 영일군 시장	6,140,000		17	" 12.18	대구시 교동시장	2,600,000	
3	" 12.25	서울 평화시장	8,430,000		18	1968. 1.12	서울 남대문시장	3,180,000	
4	" 12.28	화성 군 시장	5,532,000		19	" 1.15	성동 중앙시장	2,240,000	
5	1966. 1. 5	서울 동대문시장	2,196,000		20	" 1.24	부산 국제시장	70,090,000	
6	" 2.16	진주 중앙공설시장	197,000,000		21	" 1.26	서울 대학천시장	3,666,000	
7	" 5. 6	서울 동대문시장	1,970,000		22	" 1.31	울산 중앙시장	55,165,000	
8	" 5. 16	동대문 광장시장	39,700,000		23	" 2.15	부산 국제시장	54,800,000	
9	" 5. 20	김천 중앙시장	6,580,500		24	" 2.21	서울 자유시장	2,500,000	
10	" 10.15	원효로 원일시장	3,252,500		25	" 3. 4	서울 한홍시장	7,856,000	
11	" 12. 5	화천 군 화천시장	4,000,000		26	" 3. 7	서울 남대문시장	1,000,000	
12	1967. 1. 1	대구 서문시장	236,000,000		27	" 11. 3	대구 서문시장	121,000,000	
13	" 1. 12	부산 자갈치시장	747,100		28	" 11. 22	서울 남대문시장	342,000,000	
14	" 3. 14	서울 남대문시장	16,000,000				合 計	1,172,193,100	
15	" 9. 21	의정부 동두천 공설시장	5,645,000						

[일곱째]로 『市場法』第 10 條에는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市場을 開發한 者는 1년以下의 徵役, 禁錮 또는 百萬圓=10만원以下의 罰金에 처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現在 서울市周邊에만도 無許可市場이 40餘個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無許可市場을 당국은 團束하지도 않고 그대로 放任하고 있다. 市場周邊에 無許可類似市場이 亂立하고 類似市場自體는 『市場法』의 規制를 받지 않으므로 繁盛하고 許可市場은 委縮하는 現象이 벌어지고 있다.

<表 4>

大邱西門市場火災史

(1951~1968)

番號	火災發生日字	被　害　額	被害店舗數	備　考
1	1951. 10. 21	1,474,650,000 원	數千店舗	(當時貨幣單位)
2	1952. 2. 24	5,350,000,000	未　詳	
3	1952. 12. 26	15,000,000,000		
4	1960. 2. 5	5,360,000	30 店舗	(舊貨)
5	1960. 6. 16	5,000,000,000	3 千店舗	이재민 2 萬名
6	1961. 2. 15 (舊正)	2 億 4 千 3 百餘萬 원	3 百餘店舗	
7	1961.	417,000,000	未　詳	
8	1967. 1. 1 (新正)	700,000,000	372 個店舗	
9	1968. 10. 3 (秋夕前日)	200,000,000	(293 店舗 (230 露店	경찰추산 (98,060,000 원)

[여덟째]로는 都市의 大規模在來市場의 存在는 Reily 의 ‘小賣商引力의 法則’을 빌어 說明하지 않아도 隣近小都市의 商業發展을 沮害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大都市周邊의 隣近中小都市의 市民이나 農民들은 모두 그 大都市의 在來市場까지 와서 購買하기 때문이다.

V.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의 方向

(1) 現行『市場法』은 廢棄하고 우리나라「마아케팅」의 現代化라는 至上目標의 達成을 위한 發展意欲을 나타내는 새로운 法律 즉『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를 새로 制定하여야 한다. 日本人들이 植民地 摧取란 目的을 위해 만들어 놓은『市場規則』을 그대로 踏襲한 現行『市場法』은 그 內容面에서 볼 때 前近代的인 露店市場을 擁護保存케 하는『露店市場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 새로운『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은 中世紀的인 在來市場이나 露店商을 일정한 방향 다시 말하면 建物속으로 몰아넣는 방향으로의 提示를 하여주어 商人們로 하여금 政府의 意圖를 認識케 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協助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즉 市場이라 하면 의례히 空間的 内지 場所(open space)의인 概念으로 생각하던 것을 止揚하고 새로운 法律을 통하여 市場을 建物(building)의인 概念으로 생각하도록 國民을 啓蒙해 나가야 할 것이다. 露店때문에 商路가 不潔하고 消費者는 속기 쉽고 國家는 稅金을 逋脫當한다. 定札制實施도 露店때문에 어렵고 商道義의 향상도 期待하기 어렵다. 市場의 概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露店市場이 發展하여 ‘建物로 된 小賣市場’이 形成된 것이다. 經濟가 未發達하거나 混亂하면 露店商이 盛行하고 經濟가 發達하거나 安定되어 가면 露店商은 必然的으로 자취를 감추는 法이다. 中世紀의 市場은 달할 것도 없고, 「아프리

카나 南洋土人們의 市場과 오늘날의 歐美先進國의 商店路를 比較해 보면, 이점 容易하게 首肯이 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解放直後나 6·25 事變直後에 經濟가 混亂했을 때 서 울을 비롯한 全國의 大都市는 온 거리가 全部 露店으로 豐衍 있었다. 그러나 經濟가 安定되자 漸次 建物을 廢弃하여 그 속으로 들어 가게 된 事實을 우리는 現實的으로 보아왔다.

우리나라의 經濟도 이제相當한 程度로 發展하고 安定되었다. 지금부터 政府는 露店商에 대한 어떠한 對策을 세워 露店商을 漸進的으로 없애는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現在의 우리 나라 經濟實情으로는 露店商을 一朝一夕에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當分間은 細窮民들을 위한 露店市場을 都市郊外의 戰略的인 地點에 別途로 新設하거나 從來부터 있던 農村의 在來市場을 維持해 가면서 長期的인 計劃을 세워 段階的으로 建物을 가진 商人으로 育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現在의 東大門市場 南大門市場等의 都市內의 市場에 있는 露店商(雜商人 包含)에 대하여는 時限(1년 내지 2년)을 정하여 서 울市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地方 公共團體에서 近代的 高層市場 建物을 建立하여 資力이 있는 露店商(一部露店商은 建物內 商人보다 더 富者도 있음)은 그 建物의 上層部에 들어 가서 營業하게 하여 當分間 低賃貸料로 賃貸해 주고, 그렇지 못한 露店商은 都市변두리의 戰略的 地點에 新設한 露店 小賣市場 (都市 近郊農民들이 그들의 農生產物을 直接 가지고 와서 販賣하는 市場도 둘로 이를 農民市場(farmers' market)이라고도 한다)에 가서 營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露店小賣市場의 立地, 數 및 規模等은 都市의 人口, 交通等 여러가지 市場條件을勘案하여 地方 公共團體에서 決定하여 設立해야 할 問題이다. 김장철에는 배추, 무 등 김장거리의 販賣를 위한 都心地 거리의 季節的인 임시 露店小賣市場의 開設, 廢止, 監督도 地方公共團體에서 擔當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東大門市場이나 南大門市場등의 從來의 都市의 복장한 市場은 露店商이나 雜商人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가진 明朗한 商店路로 變貌하게 될 것이다. 西洋에서는 商人們이 定期的으로 모여들면 交通이 便利한 地點에 定期市場(週市, 年市等)이 생기고 歲月이 흐름에 따라 定期市場이 서든 곳에 常設市場이 設立되고 常設市場이 設立된 곳에 都市가 發生하였던 것이다. (都市起源說로서의 市場說). 이러한 歐羅巴 諸國의 여러 都市 가운데는 아직도 中世紀的인 週市制度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在來市場이 이미 市場의 주된 形態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食料品과 低廉한 衣類品, 青果物等 日用雜貨를 파는 文化的 遺產으로서 在來의 去來慣行을 存續시키고 있을 데다 다른 것이다. 市場의 주된 形態는 어디까지나 現代化 된 建物市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露店小賣市場 이외의 場所에서는 常設的, 固定的, 露店行為는 이를 금하여야 한다.

道路上에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行商은 어디까지나 露店商이 아니고 行商이니 無妨하다. 그러나 道路商이나 商店街內 道路上의 固定된 자리에서 매일 常設的으로 小賣營業을 하는 것은 금하여야 한다. 步行者나 自動車의 通行은 물론 火災時에 消防車의 通行에 妨害를 주어 人命과 財產에 莫大한 損害를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都市美觀上에도 대단히 보기 흉하다. 그러나 期ical나 또는 行事나 祝祭가 있을 때 臨時의 으로 道路上에서 露店을 벌이는 것은 所管警察署長의 許可를 얻어서 할 수 있다. (道路交通法 第49條 第1項準用) 從來부터 營業行爲를 하여 오던 이러한 露店商人에 대해서는 政府當局에서 長期對策을 세워 段階的으로 建物속으로 들어가게 하던지 아니면 露店小賣市場에 가서 營業을 하도록 啓蒙指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小賣商業의 近代化를 위해서는 定札制를 實施하여야 되기 때문에 新法에는 定札制 實施를 위한 強行 規定이 插入되어야 한다.

定札制實施의 沿革은 오래되지만 1852년에 史上 最初의 百貨店 「봉·말세」를 「파리」에 세운 「A·부쉬코」는 그 당시의 一般的인 小賣經營方法과는 正反對의 方法을 써서 크게 成功하였다라는 記錄이 남아 있다. 그는 그 당시만 해도 商品에는 가격을 붙이지 않고 그 때 그때 適當한 값으로 홍정해서 販賣하던 것을 그만두고 價格表示가 붙은 商品만을 팔았다. 그 밖에도 그는 그 당시의 小賣慣習을 뿐리치고 顧客이 自由로이 商店內 「카운터」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顧客이 일단 購買한 商品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自由로히 交換해 주거나 支拂된 代金을返済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傳統은 今日까지도 持續되고 있다. 美國의 「존·와나메이커」는 1874년에 그의 百貨店 「존·와나메이커」에서 定札販賣制度, 返品返金 制度를 採用하였다. 이와 같이 定札制는 外國에서는 이미 百年前에 本格的으로 實施되어 왔는데도 不拘하고 우리 나라는 아직도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들이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日帝時代에는 어느 정도 定札販賣가 實施된 일이 있었다. 日帝時代에는 定札販賣가 實施되었던 것이 解放後 우리政府가 樹立된 후에 施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로지 政府의 行政指導力의 腐化 아니면 等閑視로 밖에 볼 수 없다. 政府가 이 定札制施行을 法에 의해 強行한다면 틀림없이 施行될 것이다. 다만 이의 施行에 있어서는 充分한 啓蒙指導期間이 必要하며 都市에서 먼저 施行하여 段階的으로 農村으로 傳播施行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定札制가 實施 안됨으로 말미암아 脫稅의 憂慮가 많으며 販賣者와 消費者는 홍정하는데 莫大한 時間과 精力を 浪費 당하며 消費者는 소위 '바가지'를 쓰게 될 憂慮가 많은 것이다.

美國이나 日本등지에서는 商品의 販賣促進手段으로서 「스탬프」 販賣制度(green stamp,

blue chip 등)가 盛行하고 있다. 이러한 制度도 定札販賣制가 그前提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에 定札制 實施로 販賣者와 消費者는 많은 有形 無形의 利益을 받을 것이며 各種의 現代的「마아케팅」方式도 導入될 수 있으며, 또한 明朗한 雾靄期속에서 商去來가 이룩되어 商道義도 昇揚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國民性을 明朗化 하고 親切化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5) 새로운 法律에는 小賣商의 申告制度를 插入하여야 한다. 申告를 통하여 小賣商의 新設, 破產, 規模, 등의 現況을 業種別로 正確하게 統計數字로서 把握 整備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랜 期間 累積되면 業種別 小賣商의 出生率, 死亡率, 破產原因등은 물론 그의 長期的 趨勢도 把握할 수 있어 政府는 小賣商에 대한 指導育成 政策樹立에 크게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政府는 이러한 資料를 전혀 具備하지 못하고 小賣商 行政에 臨하고 있다. 1968년 7월에 우리나라 歷史上 最初로 商業國勢調查(Business Census)를 實施하여 現在 集計中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商業行政上의 劃期的인 舉事이며 政府의 커다란 「メリット」로 看做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國勢調查만으로는 不充分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一定時點에 있어서의 靜態的 把握이고 年中을 통하여 일어나는 小賣商의 各種動態를 動態的으로 把握할 수는 없는 것이다. 小賣商에 대한 正確한 統計 없이는 주먹구구식 暗中 模索的인 商行政밖에 할 수 없으며 科學的인 行政은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小賣商의 申告制度 實施에 앞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와 類似한 制度를 部分的으로 實施하여 왔다. 例를 들면 食肉(保健所), 煙草(專賣廳), 銃砲 火藥(市廳), 醫藥物(區廳), 骨董品(警察署)등의 小賣는 從來부터 許可制度를 實施하여 왔고 最近에는 政府에서 米穀小賣人도 登錄制를 實施하고 있다. 「서어비스」業部門에서는 理容業, 美容業, 料食業, 旅館業(保健所)등에는 許可制를 實施하여 왔다.(팔호안은 許可官廳)

이 法律에서 實施하려는 申告制度는 許可, 認可, 登錄보다는 훨씬 가볍고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모든 國民은 「營業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特別法이나 其他 規定으로 規制한 許可制以外는 누구나 簡單한 申告만으로 自由롭게 小賣商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하였다. 申告는 委任事項으로 하여 각 洞會나 市(區廳) 邑面事務所의 兩者中에서 그 事務를 取扱할 수도 있을 것이다. 外國의 例를 보면, 獨逸, 和蘭, 白耳義, 伊太利等의 諸國에서는 小賣店을 許可制 내지 登錄制로 하여 商業者의 正確한動態를 把握하여 行政에 임하는 同時に 勞動이 不足한 이러한 나라에서 商業部門의 潛在勞動力を 더욱 生產性이 높은 部門으로 移動시키는데 큰 役割을 하고 있다. 日本에서는 零細 小賣店舗의 過剩을 改善하기 위해 小賣店을 登錄制로 하고 特別立法으로 一部 業

種斗 地域에 店舗의 新設은 許可制로 할 것을 考慮하고 있다 한다.

(6) 新法에서는 大資本을 가진 製造業者 및 都賣業者들이 小賣業을 兼業할 때는 이를 申告하도록 하는 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製造業者들이나 都賣業者들이 小賣業을 直營하면 零細小賣商에게는 至大한 影響을 준다. 왜냐하면 競爭相對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政府는 零細小賣商들을 破產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해서는 製造業者나 都賣業者의 小賣活動의 規模(範圍와 去來額)를 把握하여 適切한 統制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製造業者와 都賣業者의 小賣行爲는 여러가지 社會問題를 提起한다. 製造業者는 高價한 獨占價格을 消費者에 強要할 憂慮가 있고, 都賣商人은 小賣業을 兼業함으로 말미암아 健全한 都賣商 本來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小賣商을 抑壓하고, 오늘날 우리 나라의 零細‘都散賣商’(semi-jobber, 또는 wholesaler-retailer)의 形態에서 보는 바와같이 都賣商이 成長發展을 못하고 原始的인 形態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 都散賣商이란 都賣機能과 小賣機能을 統合한 形態로서 統合主體가 都賣商인 경우도 있고 小賣商인 경우도 있다. 즉 都賣商이 相當한 量의 商品을 消費者에는 直賣하는 경우와, 반면에 小賣商이 다른 小賣商에게 都賣形式으로 商品을 販賣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歷史的으로 볼 때 都賣商이란 資本力이 充實한 小賣商이 進化發展하는 것이 原則이므로 後者は 아직 都賣 및 小賣機能이 未分化된 形態로 봄이 옳다. 또한 都賣商이 小賣機能을 統合하는 理由는 都賣만 함으로써 經營維持가 不可能한 경우에 小賣를 兼營하는 것이라므로 이는 都賣商의 退化現象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都賣商이 小賣機能을 兼擔할 때에는 다른 都賣商과 小賣商이 반대를 하고 小賣商의 都賣兼業에 대해서는 製造業者 및 都賣商이 非難을 하게 마련이다. 都賣商이 都賣商本來의 機能을 完全히 遂行한다면 번거로운 小賣行爲 같은 것은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고 또한 大都賣商의 體貌를 維持하기 위해서도 小賣行爲는 하지 않을 것이다. 外國에서는 大都賣商은 商道義上 일절 小賣行爲는 하지 않는다. 大都賣商이 自己商品을 供給받는 資本力이 약한 小賣商을 상대로 競爭한다는 것은 自己自身的 손 발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都賣商이 이와 같은 都賣商兼營을 하는 것은 앞으로 說明한 小賣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資本의 零細性 때문이다. 심지어는 自己資本은 한 푼도 가지지 않고 都賣行爲를 하는 사람도 있다. 全國 最大的 纖維都賣市場인 東大門市場에 있는 纖維都賣商 가운데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全國의 中小 企業者들이 짜 가지고 온 織物을 30일 내지 90일 延手票를 끊어 주고 받아 놓고는 小賣商에게 그것을 팔아서 收金이 되어야 비로서 製造業者에게 代金을 支拂한다. 이와같은 都賣商의 中小企業에의 寄生現象은 零細都賣商이 제대로 都賣機能을 遂

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購買, 販賣, 運送, 保管, 標準化, 金融, 危險負擔, 市場情報의 여덟 가지 「마아케팅」機能中에서도 都賣商의 가장 重要한 機能은 保管機能과 金融機能과 運送機能이다. 이들 機能이 잘遂行되어야 「메이커」에도 도움을 주고 小賣商에게도 도움을 주어 都賣商 本來의 機能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保管과 金融機能을 통해서 「메이커」는 販賣問題에 神經을 쓰지 않고 全製品을 즉시 都賣商에게 넘겨 주고 代金을 回收할 수 있고 小賣商은 都賣商의 巨大한 倉庫에서 物件을 外上으로 가지고와서 팔 수 있다. 즉, 都賣商은 「메이커」나 小賣商의 倉庫役割을 해야 하는 동시에 銀行役割도 아울러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都賣商은 資本의 貧弱으로 近代的 倉庫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都賣商의 이와 같은 脆弱性 때문에 모처럼 中小企業銀行에서 生產資金으로 融資한 돈이 製品形態로 群小都賣商의 店頭에서 退藏化하고 있다. 都賣業者들은 資金難으로 즉각 代金支拂도 못하고 積極的인 販賣促進活動도 못하고 또 運送機能도 제대로遂行 못하며 가만히 앉아서 小賣商이 사려오기만 기다린다. 따라서 中小企業은 貧弱한 運轉資金이 다시 들릴때까지 操業을 中斷하고 大企業은 資金難에 허덕인다. 이리하여 窮餘之策으로 製造業者들은 代理店 制度나 直賣制度를 택하게 된다.

(7) 세로운 法律에는 商人們의 紛爭을 周旋, 調整하는 條項을 넣어야 한다. 여기서 周旋이란 말은 紛爭解決을 위하여 第3者가 외부로부터 紛爭當事者의 直接交涉의 便宜를 圖謀하는 것이다. 보통 紛爭當事者에 대하여 直接交涉할 것을 勸誘하고 當事者들이 그에 응할 때에는 會議場所의 周旋, 連絡等의 事務的 援助를 한다. 第3者가 스스로 交涉의 内容에介入할 수는 없다. 調整은 獨立의 第3者(調整委員,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道知事, 商工部長官)가 紛爭當事의 主張을 듣고 解決을 謀索한다. 이 第3者를 調整者라 한다. 調整者는 當事者로 부터 獨立한 立場에서 紛爭의 事實을 審理하고 當事者의 主張을 듣고 解決의 條件을 決定한다. 當事者들의 主張이 調和되어一致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法에 의한 解決을 한다든가 반드시 客觀的으로 正當한 解決만을 目的으로 하지는 않는다. 대개의 경우는 妥協的으로 解決된다. 여하간, 當事者의 一致에 達하여 雙方共히 解決 勸告案에 同意한 경우에 紛爭은 解決된다. 同意하지 않으면 紛爭은 解決되지 않는다. 즉 調整者의 決定은 抱束力이 아니고 단지 勸告로서의 性質을 가질 뿐이다. 當事者는 그 것에 服從할 義務는 없다. 이것이 裁判과 相異한 重要한 點이다. 調整의 機關으로서 調整委員會가 있다. 調整委員會는 當該紛爭 當事者의 事業에 관하여 學識經驗이 있는者와 公益을 代表하는 者 中에서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道知事が 委嘱한 者 3인 내지 5인으로 構成함이 좋을 것이다. 調整委員會는 紛爭當事者들의 對審, 實地 臨檢을 행한다.

그리고 當事者들의 同意를 얻어 公開로 할 것을 決定하지 않는 一般的으로 公開하지 않는다. 決定은 多數決에 의함이 原則이다. 審理中에 當事者들의 主張을 調和시킬 수가 없을 때에는 委員會는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解決의 條件을 決定할 수 있다. 반드시 決定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決定은 委員의 全部의 出席下에 多數決에 의한다. 解決의 條件은 當事者에 提示하여 그 受諾을 要求하는 것으로 勸告의 性質을 가진다. 拘束力은 없다. 紛爭 當事者가 끝까지 委員會의 勸告를 受諾하지 않으면 1次的으로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道知事는 物品의 流通秩序의 正常化를 위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當事者에 대하여 紛爭解決를 위해 必要한 勸告를 할 수 있고 그래도 受諾 안될 때나 그 紛爭의 規模가 擴大되어 全國的인 問題가 되었을 때에는 商工部 長官이 流通秩序의 正常化를 위해 必要한 紛爭解決 勸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必要하면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道知事는 勸告 調整案을 理由를 붙여 公告할 수도 있다. 이 紛爭調整 委員會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으로 別途로 規定해야 할 것이다. 現在 大韓商工會議所內의 商事仲裁委員會는 外國商事와의 紛爭의 調整이 위주가 되어 있으나 이와같은 周旋과 調整에 의해서 紛爭의 解決이 안 될 때에는 仲裁法에 의한 法的解決을 模索해야 할 것이다.

(8) 小賣市場의 現代化에 대해서 政府는 좀더 鉅극적으로 支援해야 할 것이다. 政府는 지금까지의 生產者 위주의 支援策을 止揚하고 生產과 마아케팅을 같은 比重으로서 支援해 나가야 한다. 商人們에 대한 財政的인 補助支援策에 대해서는 이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에서는 反映하지 않았으나 小賣商人들의 地域的 協同組織인 『商店街組合法』과 業種別 協同組織인 『商業組合法』에 그것을 反映하였다. 그리고 政府는 自由黨時節에 東大門市場을 비롯한 都市의 大市場이 政治깡패에 利用되어 商人們과 消費者들에게 막대한 被害를 끼친것을 잊지 말고 다시는 市場 내지 商店街가 暗黑街의 巢窟이 되지 않도록 格別한 監督과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VII. 商店街의 育成方案

1. 商店街의 類型

商店街에는 ① '自然發生的 商店街' ② '計劃된 商店街'의 2種類가 있다. 近代的인 商店街의 거의 大部分은 自然發生的으로 形成된 것이다. 우리나라 大都市의 都心部의 商店街가 그것이다. 商店街로서 특히 計劃된 것이 美國에서 發達한 '計劃된 商店街' (planned shopping center)이다.

2. 商店街의 沿革

商店街란 商店이 集中하고 있는 거리라고 解釋하면 그 起源은 매우 오래지만 近代的인 條件과 機能을 가지는 集團形態로서의 商店街의 發生은 극히 最近의 일이다. 商店街의 發達의 典型的인 것은 美國에서 求할 수 있다.

美國에서는 第2次世界大戰後의 10年間 商店街의 發達에 好適한 環境을 주었다. 戰後 새로운 家族構成의 發達, 出生率의 飛躍의 增加, 人口의 郊外에로의 集中을 齊來하였다. 새로운 郊外地域에는 基礎가 確立한 小賣店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形態의 商店街가 必然的으로 出現하게 되었던 것이다. 自家用自動車의 普及도 重要한 要因을 이루었다. 이것은 交通混雜에 隨伴하는 커다란 問題를 提起하고 都心地의 商業地區의 駐車場設置를 困難하게 하고 새로운 住宅地域에서 都心地의 商業地區에 「쇼핑」하러 가는 것을 妨害하였다. 自動車의 利用은 消費者를 일상의 生活必需品의 購入을 위해 먼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한 同時に 駐車場을 가진 商店街는 現代生活과 調和된 顧客에 대한 訴求를 可能케 하였다.

商店街를 發達시킨 또 하나의 要因은 消費者的 購買慣習의 變化이다. 大大的in 廣告의 結果로서 消費者들은 商品의 利用度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욱 좋은 情報를 提供받게 되었다. 婦女子들의 社會進出이 많아짐에 따라서 職業生活로 奔走하게 되자 특히 편리하고 駐車가 容易한 郊外의 商店街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各種 要因으로 商店街의 수는 近年에 急速히 增加하게 되었던 것이다.

‘計劃된 商店街’는 일반적 意味로 말하는 小賣流通機關은 아니지만 「서어비스」를 提供할려고 하는 地域에 購買者를 吸引할 수 있도록 均衡있게 一定地域에 수많은 店舗를 計劃的으로 配付한 施設이다. 각店舗는 駐車場이나 「쇼핑」步道길은 施設을 他店舗와 共同으로 分擔한다. 이와 같이 計劃된 商店街는 賃借人과 開設者와 其他 店舗가 密接한 利害關係下에 結付된 企業의 一形態이며 單純한 個個의 店舗의 集合이 아니다. 多種多樣한 企業이 각기 個別的으로 店舗의 立地를 決定한 結果로서 오랜 歲月에 걸쳐 서서히 發達하여온 從來의 自然發生的 商店街와는 다르다. 즉 美國에 發達한 近代的인 計劃된 商店街는 다음과 같은 特徵을 지니고 있다.

- ① 計劃的인 商店街에 있어서의 土地와 建物, 駐車場, 店舗의 配例, 「서어비스」其他의 施設에 대한 支配權은 그 開設會社가 所有한다.
- ② 各種의 店舗와 서어비스施設은 綜合的 購買 (one stop shopping)가 可能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 ③ 利用可能한 土地의 「스페이스」의 大부분이 自動車駐車場으로 利用되고 있다. 美國에

서는 販賣用面積과 駐車場用面積의 比는 3 대지 4 對 1 이다.

④ 建設에 앞서 建築家, 市場分析家, 交通技師, 其他의 專門家의 援助를 받고 있다.

3. 商店街의 育成方案

最近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住宅公社등에 의해 都市郊外가 많이 開發되어 人口의 郊外移動이 심하여 졌다. 이를 郊外住民은 그들의 生活維持에 不可缺한 商店街가 計劃的으로 形成되지 않아서 대개 都心地에 와서 「쇼핑」을 해야 하므로 交通은 複雜하고 時間의 浪費로 그 不便性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구 450 萬의 서울特別市에 副都心하나 設立 안되어 있다. 그리하여 郊外에의 인구의 適切한 分散을 沮害하고 있다. 이러한 實情을 考慮하여 郊外의 新規住宅地에 大規模店舗와 中小商店이 機能的으로 相互補完하는 商店街를 形成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쇼핑·센터」開設會社의 指導와 調整아래 物價引下에 도움이 되는 모든 施設을 集中的으로 實施하여 大規模店과 中小商店과의 「모델」의 協業形態를 育成하여야 한다.

「쇼핑·센터」는 이와 같은 消費者物價對策에 寄與할 뿐만 아니라 小賣業者의近代化에 이바지 한다. 「쇼핑·센터」의 助成에 의해 小賣業의近代化, 大規模화를 沮害하는 狹少한 消費購買圈 및 地價問題가 解決된다. 小賣業者들은 地價가 低廉한 郊外에서 넓적한 店舗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大都市의 過密化를 防止할 수 있다. 「쇼핑·센터」는 여러가지 면에서 政府의 施策에 貢獻하지만 그것은 그냥放置하여 두면 實現되지 않는다. 政府는 「쇼핑·센터」開設을 推進하려는 者에게 建設用地를 適正한 價格으로 確保케 하도록 한다든지 「쇼핑·센터」建設에 必要한 資金은 長期低利로 融資斡旋한다든지 하여 助成措置를 講究해 주어야 한다. 現在 都心地의 市場 즉 東大門市場, 南大門市場等의 大規模在來市場은 이것을 綜合購買(one stop shopping)를 할 수 있는 商店街(쇼핑·센터)로 再開發해야 한다.

商店街組合의健全한 育成을 위해서는 法的인 뒷받침이 必要하다 零細小賣商도 中小企業이므로 다른 生產中小企業과 마찬가지로 政府의 保護育成策이 있어야 한다. 이 目的을 위해서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을 起草하기에 이른 것이다.

VII. 協同連鎖店의 育成方案

1. 連鎖店의 類型

連鎖店은 一般的으로

① 正規連鎖店(또는 會社連鎖店, regular chain, cooperative chain)

- ② 自由連鎖店(또는 任意連鎖店, voluntary chain)
- ③ 小賣商協同(組合) 連鎖店(retailer cooperative chain)

④ 消費者協同(組合) 連鎖店(consumer cooperative chain)의 4 個種類로 分類한다.

[첫째]로 正規連鎖店(또는 會社 連鎖店)이란 同種 혹은 類似한 商品을 取扱하는 多數의 小賣店舗가 하나의 企業으로서 統合되어 中央本部의 統一的 方針下에 管理運營되는 小賣業經營形態로서 다시 말한다면 同種의 商品을 取扱하고 中央地點으로부터 商品의 供給을 받는 여려 개의 小賣店이 동일한 所有와 經營下에 活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中央本部에 의하여 所有되고 共通運營을 하는 동일形態와 店舗群에 속하는 各店舗를 會社連鎖店이라 하며 이의 特質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多數의 店舗가 中央本部에 의하여 所有併合되므로 資本的一體性이 있고
- ② 各店舗가 동일 혹은 類似한 營業活動을 하므로 營業的 共通性이 있고
- ③ 中央本部에 의하여 設計, 陳列, 統制, 廣告, 訓練, 商品化計劃, 「서어비스」등에 대한 統一的 管理가 이루어지므로 管理的 統一性이 있다.

이의 始源은 1670년에 생긴 「현슨·베이」會社(Hudson's Bay & Company)가 北美 및 「캐나다」의 各地에 設置한 交易所(trading post)라고 하나 最初의 近代의인 會社連鎖店은 1858년에 생긴 「에이·엔드·피」會社(Great Atlantic & Pacific Tea Company의 略稱 A.& P.)이다.

[둘째]로 自由連鎖店(또는 任意連鎖店)은 都賣商主宰連鎖店(wholesaler-sponsored chain)이라고도 불리우며 美國商務省의 定義에 의하면 “都賣商主宰連鎖店 또는 自由連鎖店이란 都賣業者에 의해 組織되고 또 小賣商은 그의 都賣商으로부터 取扱商品의 全部 또는 大部分의 仕入을 行하는 同時에 그 反對給付로서 特정한 「서어비스」를 받는 獨占小賣商의 集團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都賣業者를 「봐란타리·그룹」都賣業者(voluntary group wholesaler)라고 부른다. 이 自由連鎖店은 巨大한 힘을 가진 會社連鎖店과의 競爭에 直面한 獨立小賣商이 會社連鎖店이 지니는 經營上의 利點을 얻기 위하여 所有(ownership)에 의해서가 아니라 獨立을 維持하면서 協約에 의해서 統合形成되는 小賣機關이다. 그러므로 自由連鎖店이란 獨立小賣商이 共同利益을 增進시키기 위해서 自發的으로 統合하여 都賣商과 結合하여 그 都賣商의 指導下에 仕入, 廣告, 商品化計劃과 같은 共同活動을 遂行하는 것이다.

都賣商은 販賣促進計劃의 樹立, 自家商標品(즉 都賣商 商標品)의 廣告, 陳列, 展示等 위한 材料의 提供, 商品化計劃, 店舗改善, 會計制度등을 위한 巡廻監督, 指導, 其他 經營

活動에 대한 指導를 하며 小賣商은 일정한 比率의 商品을 購買하며 都買商이 提案한 計劃에 따라 店舖를 改造하며 都買商標를 積極 利用하여 勸告반은 會計制度에 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會社連鎖店이 가지는 統一的 管理의 利點을 아울러 加짐으로써 經營合理化를 達成하여 會社連鎖店에 對抗하려는 것이다. 이의 始源은 1916年에 美國에서 생긴 「제네랄」都賣會社(General Purchasing and Distributing Company)이다. 이 都賣商主宰連鎖店과 類似한 것으로 '製造業者主宰連鎖店' (manufacturer-sponsored chain)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獨立小賣商들이 製造業者와 結合하여 그 指導下에 仕入, 廣告, 商品化計劃과 같은 共同活動을 遂行하는 것이다. 그러나 製造業者가 中心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製造業者가 設立한 都賣商이 中心이 됨이 보통이다. 製造業者 主宰連鎖店은 嚴密한 意味에서 「바란타리·체인」이 아니다.

[셋째]로 小賣商協同(組合)連鎖店은 小賣商이 中心이 되므로 '小賣商主宰連鎖店' (retailer-sponsored chain)이라고도 한다. 美國商務省의 定義에 의하면 "小賣商協同連鎖店은 小賣商自身이 都賣機關을 所有하고 그것을 經營하는 獨立小賣商의 集團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들 小賣商들이 協同하여 新設한 都賣機關을 小賣商協同都合倉庫(retailer cooperative warehouse)라고 한다. 이 都賣機關은 보통 加盟小賣商들의 協同倉庫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主目的은 低廉한 商品을 購入하려는 티 있다. 이의 始源은 1882년에 美國에 생긴 「발티모어」食料品都賣會社(Baltimore Wholesale Grocery Company)와 1888년에 필라델피아에 생긴 「프랑크포드」食料品會社(Frankford Grocery Company)이다.

[넷째]로 消費者들이 協同하여 消費組合形式의 小賣店을 만들어 그들自身이 共同 所有하고 經營하는 것을 消費組合小賣店(美國에서는 co-op이라고도 함)이라고 하는데 이와 消費組合小賣店이 여러개가 結合하여 그들自身의 힘으로 都賣機關을 만들어 小賣協同連鎖店과 같은 形式으로 運營하는 것을 消費者協同連鎖店 또는 消費者主宰連鎖店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消費者協同連鎖店은 美國에서는 農業協同組合의 強力한 支持를 받고 있는 中西部에서 다소 發達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消費者協同組合(消費包含)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歐羅巴에서 더욱 發達할 可能性이 크다.

本研究에서 提示한 『商店街組合과 商業組合의 組織에 關한 法律』에서는 주로 두번째의 自由連鎖店(voluntary chain)과 小賣商協同連鎖店(retailer cooperative chain)의 두가지의 連鎖店을 肯定시키는 것을 主眼으로 삼고 있다. 이 두가지의 協同連鎖店中에 小賣商協同連鎖店이 自由連鎖店보다 輝煌 歷史가 오래이자만 두 形態의 連鎖店이 다 같이 1920年代에 正規連鎖店 其他의 大規模 小規模小賣機關의 攻勢에 견디기 어렵게 되자 그 防衛策

으로서 急速한 發展을 보게 된 것이다. 즉 個人店舗로서 都賣商과 小賣商이 날날이 分立하여 經營하여서는 會社連鎖店에 대항할 길이 없어서 그들은 相互間에 獨立性을 維持해 가면서 強力한 組織의 힘으로 대항하기 위해 協同連鎖店을 組織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의 實踐內容은 共同仕入에 의해 仕入原價를 低下시키고 더욱 좋은 商品의 仕入을 하고 都賣販賣經費를 最少限度로 合理化함으로써 「코스트」 低下를 폐하고 共同宣傳, 共同販賣促進 등을 推進하여 賣上의 增大를 圖謀하는 것이 주된 것이다.

2. 連鎖店의 經營原則과 育成方案

協同連鎖店의 經營에 있어서는 本部와 加盟小賣店間에 다음과 같은 經營原則이 遵守되어야 한다.

(1) 仕入集中의 原則

加盟店은 그의 總仕入額中 一定比率(%) 이상을 本部에서 仕入해야 한다. 또 本部가 集中 仕入하는 商品에 대해서는 반드시 本部에서 仕入해야 한다. 이 때 몇 % 以上的 仕入集中率이 必要하나 하는데 대해서는 一定한 公式이 없으나 飲料品 기타의 便宜品 같은 業種은 보통 70% 以上을 目標로 해야 한다. 이것은 本部 또는 全「그룹」에 대한 忠誠을 나타냄으로 이 原則을 ‘忠誠(royalty)의 原則’이라고도 한다.

(2) 定價維持의 原則

本部가 供給하는 商品은 原則的으로 本部에서 가장 適正한 小賣價格(list price)를 정한다. 이 定價는 「메이커」가 定하는 小賣定價와 一致하거나 그 以下일 경우도 있다. 이 定價로 販賣하면 加盟店은 틀림없이 一定한 適正利潤을 確保할 수 있고 競爭에도 充分히 對抗할 수 있다는 價格을 完全한 市場調査後에 設定함으로 加盟店은 本部를 信賴하고 그 定價를 維持해야 하고 그 이상의 欲으로 팔거나 또는 欲을 짝어서 亂賣的인 價格으로 팔아서는 안된다.

(3) 規則的 發注의 原則

本部에 대한 發注에는 最低注文量 制度가 適用된다. 이것은 1回의 注文量의 最低數量이 本部에서 정해지고 그 이하의 發注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注文間隔(interval)이 時間的으로 規制되어 있다. 本部로서는 恒常 加盟小賣店의 在庫와 販賣狀況을 把握하고 1回의 注文의 最低量을 어느 정도로 하고 또 注文間隔을 몇 일로 規制하는 것이 小賣店의 商品管理에 支障을 주지 않고 配送「코스트」의 合理化에 貢獻할 수 있는 가를 충분히 計算하여 決定한다. 그러므로 加盟小賣店은 이 規則에 服從해야 한다.

(4) 現金支拂의 原則

注文商品의 支拂은 現金이라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現金引換拂(C.O.D.)이 아니라도 되며 商品引渡後 1週日 内지 10일이라는 一覽拂 이음지불도 可能하다. 本部도 「메이커」 기타의 仕入處에 대해 現金支拂을 한다. 大量仕入과 現金支拂의 雙方이 兩立되어야만 비로서 低價格仕入이 實現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流通「코스트·다운」이 實現됨으로 現金支拂原則을 遵守할 마음이 없이 協同連鎖店을 組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5) 店舗統一의 原則

加盟小賣店은 本部가 決定한 一定한 店舗外裝(看板, 標識)과 內裝(陳列, 裝飾)을 實施하고 消費者의 눈으로 보아서 完全히 同一한 「체인」의 店舗라는 것이 確認되도록 그 店舗의 統一을 폐할 義務가 있다.

以上 5原則은, 특히 (1) (2) (3) (4)의 原則은 우리 나라의 경우 即刻的으로 完全히 實施하기는 여러가지 情勢로 보아서 困難할 것이다. 따라서 多少 彈力的인 運用이 不可避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를 原則은 어디까지나 協同連鎖店經營의 基本原則이므로 계속 지켜나가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外國에서는 會社連鎖店이 먼저 發達하고 나서 그에 對抗하기 위해 協同連鎖店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協同連鎖店이 대항할 會社連鎖店이나 百貨店등의 大規模小賣機關이 없다. 그런데 왜 協同連鎖店이 먼저 必要하냐하는 論理가 나올지도 모르나 1844년에 이미 英國에 最初의 消費組合인 「롯치테일」消費組合이 發生하였드시 우리는 먼저 小商人들의 協同組合인 小賣商協同連鎖店과 自由連鎖店을 먼저 育成함으로써 大規模 小賣機關의 發達을 促進하여 流通近代化를 이루하여야 한다.

우리는 後進國이기 때문에 「마아케팅」면에서도 차름길로 가서 先進國을 「캣치·업」하자는 것이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의 目的이다.

VII.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의 必要性

小賣商業의 近代化를 위해서는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 이외에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의 制定이 必要하다. 現在 우리 나라의 中小企業에 관한 法律을 보면 『中小企業基本法』(1966년 12월 6일 法律 第 1840號)에서만 中小企業 속에 「商業其他『서비스』業」을 包含하고 있다. 즉 同法 第 2條(中小企業者의 範圍)를 보면 商法 기타 「서비스」業을 주된 事業으로 經營하는 者로서 常時 사용하는 從業員數가 20인 이하이거나 資產總額이 1千萬원 이하인 者도 同法에 의한 國家施策의 對象이 되는 中小企業者에 해당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 第 21條를 보면 “① 政府는 商業 및 「서비스」業 등

流通部門의 中小企業에 대하여 流通機構의 合理化에 適應할 수 있도록 企業規模의 適正化 事業의 協同化등 그 經營形態의 近代化에 필요한 施策을 講究한다. ② 政府는 中小企業에 대한 原資材需給의 圓滑을 기하기 위한 施策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中小企業者와 中小企業者 이외의 者 간의 流通에 관하여 適正한 調整策을 講究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中小企業協同組合法』(1961년 12월 27일 法律 第884號 改正 1963년 7월 31일 法律 第1379號)의 第2條 ‘中小企業者의 定義’를 보면 “本法에서 中小企業者라 하면 工業, 鐵業, 其他 製造等을 營爲하는 者로서 常時 使用하는 從業員의 數 또는 資產總額이 闡令으로 정하는 業種別 限界안의 規模에 속하는 者를 말한다”라고만 規定하고 商業 其他 「서어비스」法에 從事하는 者를 除外하고 있다. 그리고 또 中小企業銀行法과 中小企業 信用保證法에서도 中小企業協同組合法과 마찬가지로 商業 其他 「서어비스」業에 從事하는 者는 그 融資 或者 信用保證惠澤을 받는 者 가운데서 除外하고 있다.

따라서 現行 中小企業協同組合法, 中小企業銀行法 및 中小企業 信用保證法 등은 모두 中小生產者들만을 그 對象으로 하고 있고 商人們을 그 對象에서 除外하고 있으며 前記 諸法律속에 商業 其他 「서어비스」등을 주된 事業으로 經營하는 者를 包含시킨다 하더라도 生產者와 商人은 서로 相反되는 利害關係로 해서 어느 한 쪽에 기우터지기 쉽고公正한 法의 運用이 어려울 것이다. 고로 商人們을 위해서는 別途로 商店街組合과 아울러 商業協同組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兩組合의 設立을 위하여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의 草案을 다음에 提示하기로 한다. 商店街組合은 地域別商人們相互間의 橫的協同組合 즉 水平的 統合組織이므로 特定地域內의 異種業種을 包含한 모든 商業 其他 「서어비스」業에 從事하는 者가 그 商店街의 構成員이 되나 商業組合은 地域은 度外視하고 同一業種의 商業 및 「서어비스」業에 從事하는 者의 全國的인 組織이며 이것은 都賣機關과 小賣機關의 縱的인 關係下에서의 統合이므로 垂直的 統合組織이다. 商業組合法의 目的是 商人們의 協同活動을 助長하여 協同連鎖店 (① 小賣店協同連鎖店 retailer cooperative chain ② 任意連鎖店(또는 自由連鎖店) voluntary chain=1名 都賣商主宰連鎖店 wholesaler sponsored chain)을 育成發達시키기 위한 法律이다. 外國에서는 自然發生的으로 商業의 革新家(innovator)들이 앞장서서 政府의 支援없이 이러한 協同的 活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商業部門의 너무나 심한 後進性 때문에 그 法的 뒷받침에 의한 政府의 強力한 指導育成策이 要請되는 것이다.

XI. 都賣市場의 近代化方案

本研究는 小賣商 및 小賣市場의 近代化方案研究에 그 目的을 두고 있지만 이 問題는 「마아케팅」機構 全般的인 問題와의 關聯下에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간단히 都賣市場의 近代化方案에 대해서 論及하기로 한다.

서울은 人口가 450萬이다. 우리나라 全體人口의 6분의 1이 여기에 集中하고 있다. 이와 같은 巨大都市圈에 있어서의 流通經濟의 特色은 商去來流通과 物的流通(physical distribution)의 兩活動이 都心部에서 行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서울이 商業의 中心地로서 또한 物資의 集散地로서 發達하여 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都心部는 商去來流通의 全國的 中樞役割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한면에서는 서울의 都心部는 物的流通施設이 集中하고 있다. 서울驛 龍山驛의 鐵道貨物 爲用驛으로서의 施設, 西小門洞의 中都賣市場施設, 農協 및 大韓通運의 大型倉庫 및 트럭 「터미날」(定期貨物運送會社)의 施設, 各種 都賣商과 客主들의 倉庫施設등이 있다. 物的流通施設이 이와 같이 大都市의 都心部에 集中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意味에서 浪費와 不便을 招來하고 있다.

첫째로는 그것이 都心地의 交通輻輳를 한층 더 助長하고 있다. 都心部에 있어서의 物的流通活動은 都市生活者에 꼭 必要한 物資를 供給하기 위하여서라기 보다 오히려 都心部에 物的流通施設이 存在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都市生活自體에는 直接 必要가 없는 物資가 都心의 交通難을 加重하는 結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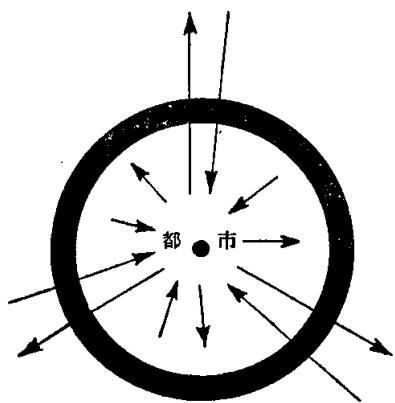
둘째로는 이들 施設은 都市 내지 都心의 貴重한 土地를 浪費케 하고 있다. 中央都賣市場이나 都心部의 民間都賣商倉庫 등을 郊外에 移轉하면 都市의 城地는 더욱 有効하게 都市人의 本來的 活動을 위해 利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都市自體뿐만 아니라 都賣商이나 物的流通業者들自身에게도 損害이다. 交通輻輳나 貨物移動의 滯滯는 都心地에서 都賣商을 經營하는 經營者나 物的流通業者에게 物流費의 上昇, 經營能率低下의 原因이 되며 그들은 또 倉庫施設의 不足, 荷役空間의 狹隘 등의 不便을 맛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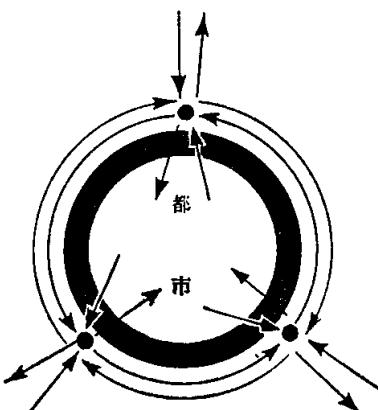
이와 같은 理由로 해서 都市는 在來의 都市機能과 物的流通機能이 分離되어 再開發되어야 한다. 즉 都市의 都心部는 「마아케팅」觀點에서 보아 情報流通이나 小賣商去來流通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며 物的流通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原則을 實踐面에 適用한다면 都市再開發에 있어서는 한쪽에서는 情報流通이나 小賣商去來등을 都心部에 集約하여 本來의 意味의 都市機能을 充實화 하는 同時에 다른 한 쪽에서는 現在

都心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各種 物的 流通의 施設이나 作業을 모두 郊外로 移動시켜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것을 그림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圖 A>



<圖 B>



<圖 A>는 우리 나라의 現狀이고 <圖 B>는 그것이 再開發된 것을 나타낸다. 또 두그림의 黑點은 流通「센터」 또는 都賣「센터」등의 物的 流通施設의 所在 位置를 表示한다. 즉 <圖 A>에서는 그것이 都心部에 位置하고 있으나 <圖 B>에서는 그것이 都市郊外에 分散되어 環狀道路에 의해서 相互 連結되어 있다. <圖 A>에서는 都市의 周邊이나 近郊에서 都心으로 향하여 送付되어 오는 모든 物資가 一旦 都心部까지 運送되어 와서 거기서 都市內의 需要家에게 發送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서울에 들어 오는 青果物과 水產物은 一旦 서울市의 都心인 西小門洞에 있는 中央都賣市場에 들어 와서 다시 全 서울特別市內의 小賣商, 消費者에게 分散 販賣된다. 또 市內의 各種 定期貨物運送會社의 貨物은 都心地에 들어왔다가 다시 各方面으로 轉送 또는 逆送된다. 이에 대해서 <圖 B>에 있어서는 都市의 周邊에서 都心으로 향해 送付되는 物資는 모두 都市周邊의 流通「센터」 또는 都賣「센터」에서 一旦 내려져서 거기서 直接 혹은 都市周邊의 循環道路를 통하여 都市內의 荷受人에게 發送된다. 이렇게 되면 前者の 경우보다 都心의 輻輳가 그만큼 緩和된다. <圖 A>에서 <圖 B>에 移行하기 위해서는 現在 都心部에 集中하고 있는 各種의 物的流通施設을 郊外의 流通「센터」 또는 都賣「센터」에 集約移轉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앞으로의 都心地는 高度의 管理中樞地區가 되며 情報流通「센터」로서의 機能을 다 하게 되고 都市商人은 여기서 情報을 交換하고 意思決定을 하도록 한다. 또한 여기에 商品見本을 두고 商談을 한다. 見本市나 展示會 같

은 情報流通의 機能은 앞으로는 이러한 都心部에 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商談이 이루어지면 企業情報은 即刻 郊外의 流通「센터」내지 都賣「센터」에 보내져서 여기에서 商品이 目的地(小賣商 또는 大量消費者)로 향해 發送된다. 都心과 流通「센터」내지 都賣「센터」사이 혹은 流通「센터」내지 都賣「센터」相互間은 TV 나 電話線이나 「태레타이프」등의 情報「시스템」으로 密接하게 連結되어야 한다. 요컨대 <圖 A>와 같은 今日의 現狀下에서는 情報流通機能과 物資流通機能이 모두 都心部에 모여 있으나 <圖 B>와 같은 狀態下에서는 情報流通機能만이 都心部에서 集散된다. 이와 反對로 物財活動은 可能한 한 郊外에로 分散된다.

서울이나 釜山과 같이 都市過密化現象에 의해 都賣機能이 沮害되고 있는 곳에서는 都賣商의 立地條件을 改善하여 流通의 合理化近代화를 할 必要가 있다. 이 目的을 위해서 前記한 바와 같이 郊外의 戰略的인 地點을 選定하여 流通「센터」(生鮮食料品), 내지 綜合都賣「센터」(工產品)를 設立하여야 한다. 都心部의 過密化, 自動車氾濫으로 인한 道路事情의 惡化등으로 交通이 輻輳하여 都賣商의 中요한 機能인 集荷, 荷役, 配送, 保管등의 機能이 障害를 받는 同時에 顧客인 小賣商에게도 購入에 큰 負擔을 줌으로 都賣商의 集團施設로서 將來의 去來量增大에 對備해서 郊外에 이런 施設이 必要한 것이다.

美國에서는 2次大戰부터 「머찬다이즈·빌딩」을 都市內에 設立하여 數百의 都賣商을 收容하여 왔다. 그중 특히 有名한 것이 「시카고」에 있는 「머찬다이즈·마아트」(merchandise mart)이다. 이 「밸딩」은 「조세프·캐네디」에 의해 1930년에 設立되었는데 地上 24 층 地下 4 층 總面積 38萬平方미터로서 美國防省建物을 除外하고는 世界에서 가장 建坪이 넓은 建物이다. 이 建物 속에는 約 800의 都賣商이 들어 있어서 거의 모든 商品을 取扱하고 있다. 全世界에서 顧客이 찾아오는데 하루의 顧客이 2萬名을 넘는다고 한다.

綜合都賣「센터」는 展示場 去來場 事務所등은 勿論 荷受 荷役 保管등의 기능을 모두 遂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또한 小賣商 내지 地方都賣商에 대한 「쇼핑·센터」役割도 하므로 都賣商은 業種別로 어느 程度 集團化시켜 配置시켜야 한다. 商品의 荷役 配送 保管을 위한 施設을 共同利用하고 協業化의 利益을 享有함으로써 物資의 流通「코스트」를 低減시키기 위해 「트럭」操車場, 荷役場, 保管場, 顧客을 위한 駐車場등의 諸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生鮮食料品의 都賣商의 現狀을 보면 生鮮은 水產市場, 野菜와 果實은 青果市場, 肉類는 屠殺場과 같이 生鮮食料品의 都賣市場이 각單品마다 나눠져서 相異한 場所에서 去來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非能率의이다. 우리 나라의 都賣機構의 近代化는 生鮮食料品市場이 都賣商이 든 간에 如何히 現在의 單品販賣機構에서 脫却하여 多

種의 食料品을 綜合的으로 取扱할 수 있는 販賣機構 즉 流通「센터」(團地)로 轉換하는 加에 그 中心的課題가 있는 것이다.

現在의 東大門市場이나 南大門市場은 小賣「쇼핑·센터」化함으로 거기서 都小賣 兼業을 하는 商人們은 都賣業, 小賣業中 어느 하나를 택하게 하여 小賣業을 택한 자는 그 「쇼핑·센터」에서 營業케 하고 都賣業을 택한 者들은 新設되는 綜合都賣센터나 流通센터에 들어가서 營業을 하도록 勸獎해야 할 것이다. 이 綜合都賣센터를 設立하기 위해서는 莫大한 資金이 必要함으로 都賣商의 貧弱한 資金만으로는 到底히 불가능할 것이다. 政府에서는 都賣商에 대한 5個年計劃을 세워 이를 建設해 나가야 할 것이다. 都賣商에 대한 法的規制는 現行 中央都賣市場法 以外에 그 必要性을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法的規制對象에서除外하였고 또한 獨立된 單行法도 構想하지 않았다. 日本 其他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그려하다.

X.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案의 骨子

1. 이 法의 名稱

從來의 『市場法』은 이를 廢止하고 그 대신에

- ①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으로 代置하고 이를 補完하기 위해
- ②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을 別途로 制定하기로 하였다.

『小賣市場近代化促進法』으로 안하고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다음의 이 法의 内容을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法이 小賣市場만을 다루지 않고 小賣機能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더 包括的인 廣意의 名稱을 붙이기 위해서이다. 近代化促進法이란 말을 부친 것은 이 法이 法趣旨대로 施行만 된다면 在來市場의 異狀的 發達形態인 現在의 都市의 大規模市場이 現代的인 商店街로 化하고 이들 商店街와 都心地 獨立小賣商과의 同一基盤위에서의 競爭의 結果 舊來의 市場의 内部 및 外部에서近代化된 大規模 小賣機關(百貨店, 連鎖店, super-market, 割引店等)이 爽ter서 發展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2. 市場의 分類와 定義

이 法에서는 市場을 小賣市場과 露店小賣市場으로 나누어서 規制하였다. 小賣市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物品을 販賣하는 10인 以上의 小賣商의 店舗가 들어 있는 單一建物의 市場을 말하고 露店小賣市場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을 具備하고 區劃된 地域에서 매일 또는 定期的으로 多數의 需要者와 供給者가 來集하여 物品의 買賣交換을 행하는 場所 또

는 空間의 市場을 말한다.

3. 이 法의 内容

이 法에서 規制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小賣市場(建物市場)의 規制
- ② 製造業者 및 都賣業者의 小賣業兼業의 申告制度
- ③ 小賣商의 申告制度
- ④ 定札制의 實施
- ⑤ 紛爭의 調整
- ⑥ 露店小賣市場의 規制
- ⑦ 露店小賣市場 이외에서의 露店小賣行爲의 禁止
- ⑧ 小賣市場 및 露店小賣市場의 監督
- ⑨ 罰則

4. 补 助 政 策

小賣市場商人들의 財政的 补助政策에 대해서는 小賣商들의 地域的 協同團體인 商店街組合과 業種別 協同團體인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에서 充分히 考慮하였으므로 이 法에서는 除外하였다.

5. 金融支援政策

그 밖에도 中小商人들은 現在 中小企業銀行의 金融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商人들이 政府의 資金補助아래 會員制度에 의한 協同組織으로 自身들의 金融問題를 解決하는 『商業信用金庫法』의 制定이 切實이 要望되나 이 問題는 財務部의 所管事項이므로 本研究에서는 다만 그 必要性만 強調하여 두기로 한다.

6. 家畜市場問題

우리나라의 家畜市場은 在來市場과 함께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開市日字와 場所도 在來市場과 같이 매 5일마다 在來市場과隣接 내지同一場所에서 開市되고 있다. 家畜市場에 대해서는 畜產法 第5章 第24條 내지 第34條에 規制하고 있고 또 農林部의 所管이므로 이 研究에서 除外하였다.

XI.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案)의 骨子

- ① 商人們의 地域的, 水平的 組織으로서의 商店街組合을 育成하고 또 中小商人들의 業種別, 垂直的 組織으로서의 商業組合을 育成하여 우리나라에 商店街와 協同的 連鎖店을

發展시켜 流通近代化를 促進하려는데 이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의 目的이 있다.

② 兩組合이 모두 協同組合의 形式을 따랐고 外國 및 우리나라의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을 많이 參照하였다. 그래야만 政府에서 補助金을 받을 수 있는 明分이 서기 때문이다. 政府의 할 일은 大企業의 獨占의 橫暴는 이를 抑制해야 하나 中小商業의 協同의 努力에는 이를 支援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兩組合은 모두 聯合會만을 가지게 하여 2段階組織으로 하고 中小企業協同組合과 같아 그 위에 中央會를 두어 3段階組織으로 하지 않았다.

④ 兩組合 및 兩聯合會는 組合員 및 會員의 資格과 事業內容만 다르고 그밖에 設立, 機關, 會計, 解散과 清算등에 대해서 共通의으로 規定하였다.

⑤ 兩組合과 兩聯合會는 모두 政府의 嚴格한 監督을 받는 대신 政府로부터 補助金等 財政의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⑥ 兩組合 및 兩聯合會에 대해서는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 印紙稅, 登錄稅, 取得稅, 財產稅 및 免許稅를 賦課하지 아니하고 兩組合事業에 의한 組合所得中 組合員에게 配當되는 剩餘金에 대해서는 所得稅, 法人稅를 그 配當金額에 따라 各組合員에게 賦課하도록 하였다.

⑦ 兩組合 및 兩聯合會는 政治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組合 또는 聯合會의 任員은 政黨의 任員이 될 수 없게 하였다.

⑧ 公務員(選舉에 의하여 選任된 公務員 包含)은 組合 또는 聯合會의 任員이나 職員이 될 수 없게 하였다.

法 案

- (1)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案)
- (2)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案)

(法案 1)

小賣商業近代化促進法(案)

第1條 (目的) 이 法은 小賣市場의 秩序있는 發展과 健全한 小賣商業活動을 保障함으로
써 小賣商業의 近代化를 促進하는데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註] 從來의 『市場法』이 都賣商과 小賣商이 分化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지고 '建物市場'
과 '露店市場'이 分化되지 않는 原始的인 在來市場 또는 그의 外延的 形態의 市場을
對象으로 한데 대해서 이 法에서는 都賣市場을 除外하고 小賣市場만을 規制對象으로
삼았다.

第2條 (小賣市場의 定義) 이 法에서 小賣市場이라 함은 하나의 建物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한 物品을 販賣하는 10인 以上의 小賣商의 店舗로 使用되는 것을 말한다.

[註] 이 條項은 國民(消費者)들로 하여금 '小賣市場'을 從來의 '場所'의인 概念에서
'建物'의인 概念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國民들이 '市場'이라 하면
'露天' (open space)이 아니고 '建物'을 聯想하도록 되어야 小賣市場의 近代化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露店市場(從來 5일마다 열리는 在來市場 包含)에 대해서
는 舊時代의 遺物로서 앞으로 漸進的으로 그 數를 縮少 내지 廢止하는 方向에서 國
民들로 하여금 現代의 非正常的인 小賣市場形態로 認識시키기 위해서 이 法의 末尾
第18條 以下에서 規制하였다. 小賣市場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物品을 販賣하는
10인 以上의 小賣商 이외에도 修理業者, 加工業者 또는 그밖에 同令으로 指定하지 않은
物品을 販賣하는 小賣商도 混在할 수 있다. 大統領令으로 정하지 않은 物品(指定商品)
을 販賣하는 10인 以上의 小賣商이 貸를 주고 듣고 있는 建物은 '小賣市場'이
아니다.

第3條 (小賣市場의 許可) ①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면 小賣市場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의 建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店舗로 使用하
는 小賣商에 賃貸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

[註] 이 條項은 從來의 市場法의 第2條 第3號의 規定을 援用한 것이다.

② 前項의 許可是 하나의 建物마다 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지붕, 기둥 또는 壁을 共通으로 하는 建物 및 同
一 基地 内의 둘 以上의 棟을 이루는 建物은 이것을 하나의 建物로 보며 建物에 附屬建

物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합한 것을 하나의 建物로 본다.

④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할려고 할 때는 當該 建物이 所在하는 市 邑 面의 長(特別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以下 같다)과 協議하여야 한다. 但 同項의 許可를 얻고자 하는 者가 當該 市邑面長일 때는 協議를 안해도 된다.

第 4 條 (許可의 申請) ① 前條 第 1 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 申請書를 그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 그 建物이 所在하는 市의 市 邑 面長을 經由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1) 申請者의 名儀와 住所 그리고 法人에 있어서는 그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의 姓名과 住所

(2) 그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 및 小賣商에 貸貸 또는 讓渡하는 建坪數

(3) 그 建物을 그의 店舖로 使用하기 위해 貸借하거나 또는 讓渡받는 小賣商의 數 및 그 小賣商이 주로 販賣하는 物品의 種類

(4) 그 建物에 대해 申請을 하여 許可받은 날 以後 그 店舖의 貸貸로 인하여 小賣商으로부터 徵收하는 貸貸料金의 額 기타의 貸貸條件 또는 그 店舖의 讓渡로 인하여 小賣商으로부터 徵收하는 讓渡代金의 額 기타의 讓渡條件

② 前項의 申請書에는 그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를 表示하는 圖面, 그 建物의 貸貸契約案, 讓渡契約書案, 小賣市場業務規程 기타 商工部令으로 정하는 書類를添付하여야 한다.

第 5 條 (許可의 基準)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 3 條 第 1 項의 許可의 申請이 있을 때는 그 申請이 다음 각號의 一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同項의 許可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1) 當該 小賣市場이 開設됨으로써 該當 小賣市場 内의 小賣商과 周邊의 小賣市場 内의 小賣商과의 競爭 또는 當該 小賣市場 内의 小賣商과 周邊의 小賣商과의 競爭이 過度하게 行해짐으로써 그 때문에 中小 小賣商의 經營이 顯著하게 不安定하게 될 憂慮가 있을 때

(2) 前條 第 1 項 第 4 號의 貸貸條件 또는 讓渡條件이 商工部令으로 정해진 基準에 適合하지 않을 때

[註] 小賣市場開設者가 貸貸料를 마음대로 決定하게 하여 自由競爭을 시키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지나치게 심한 貸貸料操作으로 物價騰貴를 刺戟할 憂慮가 있을 때 그것을 統制할 수 있도록 한 條項이다.

- (3) 申請者가 이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刑에 處해져서 그 執行이 끝나거나 또는 그 執行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을 經過하지 않는 者일 때
- (4) 申請者가 法人일 때는 그 法人的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의 全部 또는 1部가 前號에 該當하는 者일 때
- (5) 申請者가 第 8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받고 그 取消日로부터 1년을 經過하지 않은 者일 때

第6條 (變更의 許可등) ① 第 3 條 第 1 項의 許可를 받은 者(以下‘小賣市場開設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1) 第 4 條 第 1 項 第 2 號의 小賣商에 賃貸하거나 또는 讓渡하는 建坪數를 增加할려고 할 때
- (2) 第 4 條 第 1 項 第 4 號의 賃貸條件 또는 讓渡條件를 變更할려고 할 때
- ② 小賣市場開設者는 第 4 條 第 1 項 第 1 號 내지 第 3 號의 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第 1 項 第 1 號에 該當하는 경우를 除外한다)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當該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 申告하여야 한다.
-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있어서는 第 3 條 第 1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條 (承繼) ① 第 3 條 第 1 項의 許可에 관련된 建物의 全部 또는 一部의 讓渡, 賃貸 또는 返還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한 바에 따라 그의 建物의 全部 또는 一部와 관련된 小賣市場開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② 小賣市場開設者에 대하여 相續 또는 合併이 있을 때에는 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혹은 合併에 의해 設立된 法人은 大統領令에 정한 바에 따라 當該 建物에 관련된 小賣市場開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③ 前 1 項의 規定에 의해 小賣市場開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當該 市長 또는 道知事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8條 (許可의 取消) ①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은 小賣市場開設者가 正當한 理由가 없는데도 第 3 條 第 1 項의 許可에 관련된 建物을 大統領令으로 정한 物品을 販賣하는 10 인 以上의 小賣商의 店舗로 使用케 하기 위해 그들에게 賃貸 또는 讓渡하지 않는 期間이 繼續해서 1년 以上이 될 때 혹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 또는 許可條件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그 小賣市場開設者에 관련됨 同項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業務의 停止 또는 “制限을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있어서는 第3條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註] 小賣市場開設者가 小賣市場을 開設한 後 大統領令으로 定한 商品을 販賣하는 商人이 9인 以下의 狀態로 1년 以上 經過해도 小賣市場開設 許可가 取消된다.

第9條 (製造業者 및 都賣業者의 小賣業兼業의 申告) 製造業者 또는 都賣業者로서 當該 物品의 小賣業을 營爲하는 者는 商工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事實을 서울特別市長, 釜山市場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그 小賣業을 廢止하였을 때에도 同一하다.

[註] 政府는 大資本의 製造業者, 都賣業者의 橫暴로부터 中中小賣商을 保護하기 위해 그 實態를 把握하여 두어야 한다.

第10條 (小賣商의 申告) 建物 内에서 販賣하는 모든 小賣業者는 商工部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營業場所가 所在하는 市 邑 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그 小賣業을 讓渡하거나 廢止했을 때에도 同一하다.

[註] 特定期間의 小賣商의 新生率, 死亡率(破產率)의 把握은 政府의 政策樹立에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商業「센서스」는 매년 實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명가게등의 零細店의 申告를 督勵하기 위해서는 洞會職員 또는 警察官을 動員하는 것도 一方方法이다. 教育水準이 낮은 地方의 零細小賣店등의 申告를 위해서는 地域別, 時間別로 順次의 으로 施行해 나가야 할 것이다.

第11條 (定札制의 實施) 모든 小賣商은 商工部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販賣하는 모든 物品에 그 商品의 定價表를 붙여야 한다.

[註] 定札制實施는 消費者教育 및 商人們의 啓蒙을 併行하면서 教育水準이 높은 서울特別市를 비롯한 大都市에서 먼저 實施하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第12條 (周旋 또는 調停)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紛爭에 대하여 그 紛爭의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에서 周旋 또는 調停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物品의 流通秩序의 正常化를 위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迅速히 周旋 또는 調停한다.

- (1) 製造業者가 그 自身이 製造한 物品을 一般消費者에 대해서 販賣하는 경우 그 物品과 同種의 것을 販賣하는 中中小賣商과 그 製造業者와의 사이에 發生한 紛爭
- (2) 都賣業者가 그 自身이 都賣하는 物品을 一般消費者에 대해서 販賣하는 경우 그 物品과 同種의 것을 販賣하는 中中小賣商과 그 都賣業者와의 사이에 發生한 紛爭
- (3) 前 2號에 揭示한 것 외에 中中小賣商 以外의 者가 一般消費者에 대해서 物品을 販

賣하는 경우 그 者와 中小賣商과의 사이에 發生한 紛爭

(4) 小賣市場의 開設者 또는 小賣商과 當該 建物이 所在하는 場所의 周邊의 地域 内의
中小賣商과의 사이에 發生한 紛爭

(5) 小賣市場 内의 建物主, 基地主 및 商人의 相互 間의 利害關係에서 發生하는 紛爭

[註] 周旋이란 紛爭解決을 위하여 第三者가 外部로부터 紛爭當事者들의 直接交涉의 便
宜를 圖謀하는 것이다. 보통 紛爭當事者들에 대해서 直接交涉할 것을 勸하고 當事者
들이 이에 應할 때에는 會談場所의 周旋, 連絡등의 事務的 援助를 한다. 第3者가 스
스로 交涉의 內容에 介入할 수는 없다.

第13條 (調停委員等) ①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은 前條의 調停을 調停委員
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調停委員은 一事件마다 3인 以上 5인 以内로 하고 公益을 代表하는 者 및 當
該 紛爭의 當事者의 事業에 관하여 學識經驗이 있는 者 中에서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が 委嘱한다.

③ 第1項 調停委員이 前條의 調停을 行하는 경우에는 調停案을 作成하여 그것을 當
事者의 雙方에 提示하여 그 受諾을 勸告한다.

④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가 있는 경우 物品
의 流通秩序의 正常化를 위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는 그 勸告 調停案을 理由로 부쳐
公表할 수 있다.

⑤ 前各項에 定한 것 以外의 調停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勸告)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은 第12條의 各號에 揭示하는 紛爭
이 發生한 경우(그 紛爭에 대하여 第12條의 周旋 또는 調停이 行하여지고 있는 경우는
除外)에 있어서 物品의 流通秩序의 正常化를 위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는 그 紛
爭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에 대해 그 紛爭을 解決하기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가
있다.

第15條 (同前) ① 商工部長官은 第12條 各號에 揭示하는 紛爭 (同條의 周旋 또는 調停
이 行해지고 있는 것은 例外)에 대해서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로부터 報
告가 있을 때는 物品의 流通秩序의 正常化를 위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그 紛爭
의 當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에 대해 그 紛爭을 解決하기 위해 必要한 勸告를 할 수가
있다.

第16條 (報告와 檢查) ①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은 이 法律의 施行에 必要

한 限 度 内에서 小賣市場開設者 혹은 第3條 第1項의 許可와 관련된 建物 内의 小賣商에 대해 必要한 事前의 報告를 要求하고 또 그 職員으로 하여금 그들의 事業所 혹은 事務所에 들어가서 業務의 狀況 혹은 帳簿書類를 檢查시킬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해 檢查를 하는 職員은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明書를 携帶하고 關係人에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異議申請) ①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해서 내린 處分에 대해서 그 不服이 있는 著는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前項의 異議申請이 있을 때는 異議申請人에 대해서相當한 期間을 두고 豫告를 한 후 公開에 의한 聽聞을 行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豫告에 있어서는 期日, 場所 및 事案의 内容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聽聞에 있어서는 異議申請人 및 利害關係者에게 當該 事案에 대한 證據를 提示하고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부여하여야 한다.

第18條 (露店小賣市場의 定義) 露店小賣市場이라 함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시설을 구비하고 區劃된 地域에서 每日 또는 定期的으로 多數의 需要者와 供給者가 來集하여 物品의 賣買交換을 行하는 장소를 말한다.

[註] 露店市場의 정의는 『市場法』의 第2條 第1號 및 第2號의 定義를 採用한 것이다.

이 露店市場에는 5일마다 開市되는 在來市場도 包含되고 都市의 外郭地帶의 戰略的 인 地點에 地方公共團體가 設置하는 常設露天市場도 包含된다. 이 露店市場은 建物로 된 ‘小賣市場’과 對蹠的인 存在이며 앞으로 점차 그 數를 減少시키고 建物로 된 ‘小賣市場’으로 育成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露店’이란 文字를 使用한 것도 現代的 ‘小賣市場’과 뚜렷한 差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第19條 (露店市場의 開設) 露店小賣市場은 各 市邑面의 中心部를 피하고 그 边두리에 개설하여야 한다.

[註] 도시의 都心에는 「쇼핑·센터」를 育成하고 邑面의 中心部에는 현대적인 건물을 가진 獨立小賣商을 육성 발달시키기 위해서 원시적인 農民市場(farmer's market)兼 都市露店雜商人들의 集合市場으로서의 露店市場은 市邑面의 边두리에 設立키로 하였다.

第20條 (露店小賣市場의 開設者) 露店小賣市場은 市邑面의 長이 아니면 開設하지 못한다

[註] 現代的 건물로 된 ‘小賣市場’은 민간인에게 개설케 하여 勸獎하고 露店小賣市場은 亂立을 防止하기 위해 地方公共團體에서만 開設할 수 있도록 制限하였다.

第21條 (露店小賣市場의 開設許可) 露店小賣市場을 개설하고자 하는 市 邑 面의 長은

商工部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露店小賣市場業務規程과 同市場이 所在하는 장소를 表示하는 圖面 기타 필요한 서류를 添付하여 신청서를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提出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露店小賣市場業務規程을 变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2條 (露店小賣市場의 許可要件)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前條의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法令으로 정하는 상당한 消防施設과 衛生施設이 具備되어 있지 아니하면 露店小賣市場의 개설을 허가하지 못한다. 但 大統領令의 정하는 特別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消防施設을例外로 할 수 있다.

第23條 (類似名稱使用禁止) 이 法律에 의하여 開設許可를 받은 小賣市場 또는 露店小賣市場이 아니면 小賣市場이라는 명칭을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4條 (露店營業行爲의 禁止) 露店小賣市場 이외의 商店街 其他 道路上의 固定된 위치에서 常設的으로 露店小賣營業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임시적으로 도로에 露店을 널려고 할 때는『道路交通法』中 第49條 第1項의 규정을 準用한다.

[註] 露店營業行爲의 禁止는 露店營業者에 대한 對策을 마련해 놓고 時日을 두고 段階的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條文은 東大門市場, 南大門市場등 현재의 시장구역 내의 道路상에서 常設的으로 노점영업을 하는 잡상인들에게 노점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벤두리의 노점소매시장에 가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현재의 시장을 깨끗한 遊步場을 가진 상점가로 發展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로상에서 移動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行商이므로 묵인하지만 길모퉁이등의 고정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第25條 (監督)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公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매시장 또는 노점소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해서 그 시장의 위치 건물의 구조 설비 또는 그 시장 업무규정의 变경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26條 (廢止申告) 小賣市場 또는 露店小賣市場의 개설자가 그 시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폐지하기 1개월 전에 그 이유를 붙여서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7條 (公告)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小賣市場 또는 露店小賣市場開設을 許可 또는 取消하거나 또는 폐지의 申告를 받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開設日字, 取消日字, 또는 폐지일자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고 商工部長官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28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년 以下의 罷役, 禁錮 또는 10萬원 以

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虛偽 또는 不正한 사실에 의하여 第3條 第1項 또는 第6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者

第29條 (同前) 다음 각號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1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2項, 第9條 또는 第10條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虛偽의 申告를 한 者

(2) 第11條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第16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않거나 또는 虚偽의 報告를 한 者

(4) 第16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檢查를 拒絕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한 者

(5) 第23條, 第24條, 第25條, 第26條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小賣市場 또는 露店小賣市場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장의 질서를攬亂한 者

第30條 (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 혹은 自然人の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自然人の 업무에 관하여 前2條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대하여 前條의 刑을 科한다. 但 法人 또는 自然인이 그 代理人 또는 使用人 기타의 종업원의 당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대해서는例外로 한다.

第31條 (施行細則) 이 法律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써 정한다.

附 則

① 이 法律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市場法』은 이를 廢止한다.

[註] 第11條 第24條의 施行은 消費者와 商人の 教育啓蒙期間을 두고 大統領令으로 時期的, 地域의인 要素를 考慮하여 段階的으로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以 上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의 組織에 관한 法律(案)

— 目 次 —

- 第1章 總 則
- 第2章 商店街組合
 - 第1節 通 則
 - 第2節 事 業
- 第3章 商業組合
 - 第1節 通 則
 - 第2節 事 業
- 第4章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에 대한 通則
 - 第1節 組合員
 - 第2節 設 立
 - 第3節 機 關
 - 第4節 會 計
 - 第5節 解散과 清算
- 第5章 商店街組合聯合會 및 商業組合聯合會에 대한 通則
 - 第1節 會 員
 - 第2節 事 業
 - 第3節 設 立
 - 第4節 機 關
 - 第5節 會 計
- 第6章 登 記
- 第7章 監 督
- 第8章 罰 則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律은 中小規模의 상업 또는 「서어비스」業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相互扶助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行함에 필요한 조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商店街組合과 商業組合의 擠전한 育成을 기하는 동시에 그들의 公正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自主的인 경제활동을 促進하여 그들의 경제적 지위의 向上과 國民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註] (1) 商店街組合과 商業組合의 兩組合의 目的을 統合해서 규정한 것이다.
(2) 商店街組合은 도시와 대규모 常設在來市場 및 都心商街를 현대적 商店街(shopping center)로 전환시키고 또한 앞으로 計劃商店街(planned shopping center)를 嘉勵하기 위한 것이다.
(3) 商業組合은 協同的 連鎖店(retailer cooperative chain, voluntary chain)등의 大規模小賣商을 助長하기 위한 것이다.

第2條 (基準 및 原則) ① 이 法律에 의하여 設立되는 商店街組合, 商店街組合聯合會 또는 商業組合, 商業組合聯合會(以下 兩組合 또는 兩聯合會를 ‘組合’ 또는 ‘聯合會’라 한다)는 이 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다음 要件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組合員 또는 會員(이하 ‘組合員’이라고 總稱한다)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할 것
(2) 組合員은 任意로 加入하고 또 脫退할 수 있을 것
(3) 組合員의 議決權 및 선거권은 出資座數에 不拘하고 平等할 것
(4) 組合의 剩餘金의 配當은 主로 조합사업의 利用分量에 응하여 實施하고, 出資額에 응하여 配當할 때는 그 限度가 정해 있어야 할 것
② 組合은 그의 사업을 통해서 그 組合員 또는 會員에 直接 奉仕함을 目的으로 하고 特정한 조합원의 이익만을 目的으로 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된다.

第3條 (政治關與의 禁止) ① 組合 또는 聯合會는 政治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組合 또는 聯合會의 任員은 정당의 任員이 될 수 없다.

第4條 (政府의 協力義務)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組合 또는 聯合會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協力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公共團體는 그 시설을 조합 또는 연합회가 利用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 또는 公共團體 이외의 者보다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聯合會會長은 組合 또는 聯合會의 발전에 관하여 政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第5條 (公務員의 兼職禁止) 公務員(선거에 의하여 선임된 公務員을 包含)은 組合 또는 聯合會의 任員이나 職員이 될 수 없다.

第6條 (租稅의 免除) 組合 또는 聯合會에 대하여는 所得稅, 法人稅, 営業稅, 印紙稅, 登錄稅, 取得稅, 財產稅 및 免許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但 이 法 第15條 第27條의 사업에 의한 組合所得 중 組合員에게 配當되는 剩餘金에 대하여는 所得稅, 法人稅를 그 배당금액에 따라 各 組合員에게 賦課한다.

第7條 (民法의 準用) 組合과 聯合會에 관하여 本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民法 중 法人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第8條 (主務部長官의 監督) ①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 또는 聯合會는 商工部長官이 監督한다.

② 前項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商店街組合

第1節 通 則

第9條 (種類) 商店街組合의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① 商店街組合(以下 ‘組合’이라 한다)

② 商店街組合聯合會(以下 ‘聯合會’라 한다)

第10條 (人格과 住所) ① 組合 및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② 組合 및 聯合會의 住所는 그의 主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第11條 (名稱使用과 類似名稱使用禁止) ① 組合 또는 聯合會는 그 名稱 중에 商店街組合 또는 商店街組合聯合會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法에 의해서 設立되는 組合 또는 聯合會가 아니면 前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組合 또는 聯合會의 名稱에 대해서는 商法 第22條(商號登記의 效力) 및 第23條(主體를 誤認시킬 商號의 사용금지)의 규정을 準用한다.

[註] 명칭을 부칠 때는 ○○商店街組合 또는 商店街組合聯合會라고 부친다.

第12條 (區域) ① 組合의 區域은 小賣商業 또는 「서어비스」業에 속하는 사업을 営爲하는 者의 30인 以上이 近接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市에 속하는 區域으로서 그 대부분에 商店街가 形成되어 있어야 한다. 各 市內의 商店街組合의 區域은 主務官廳이 지정한다.

단, 小賣商業 또는 「서어비스」業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 30인 以上이 近接하여事業을 영위하는 區域으로서 그 大部分에 商店街가 形成되어 있는 곳이 市의 區域과隣接하는 郡에 걸쳐 있을 경우에 한하여 當該 郡의 區域에 걸쳐있는 部分의 地域을 그 區域에 包含시킬 수 있다.

② 組合의 구역은 다른 組合의 구역과 重複하여서는 아니된다.

[註] 여기서 30인 以上이 '隣接하여' 라고 하지 않고 '近接하여' 라고 한 것은 30인 以上이 연속적으로 인접하지 않고 中間에 다른 집이 끼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第13條 (組合員의 資格) 組合의 組合員의 資格을 가진 者는 그 區域 내에서 小賣商業 또는 「서어비스」業에 속하는 사업 그밖에 定款에서 정한 事業을 영위하는 者로 한다.

第14條 (組合의 設立) 組合은 組合區域 내의 組合員 資格을 가진 者의 3분의 2 以上이組合員이 되고 또한 總組合員의 2분의 1 以上이 小賣商業 또는 「서어비스」業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면 設立할 수 없다.

[註] 同一區域 内에 2個 商店街組合이 競合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第2節 事　業

第15條 (商店街組合의 事業) ① 商店街組合은 다음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行할 수 있다.

- (1) 販賣, 購買, 保管, 運送, 檢查 기타 組合員의 사업에 관한 共同施設
- (2) 組合員들을 위한 商品券의 發行, 割賦購入의 周旋 기타 販賣方法에 관한 共同事業
- (3)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福利厚生에 관한 시설
- (4) 組合員의 사업에 관한 경영 및 기술의 改善向上 또는 組合事業에 관한 知識의 普及을 피하기 위한 教育 및 情報의 提供에 관한 시설
- (5) 組合員에 대한 사업자금의 貸付(여음의 割引을 包含) 및 組合員을 위한 자금의 借入
- (6) 街路燈, 「아케이드」, 駐車場, 物品預託所, 休憩所등 組合員 및 一般公衆의 편리를 築謀하는 시설
- (7) 組合員의 사업에 관한 休日, 開店 또는 閉店의 時刻에 관한 指導
- (8) 組合員의 종업원의 고용 및 그의 賃金, 노동시간, 宿舍등의 노동조건의 改善에 관한 사업
- (9) 組合員의 事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상점가조합의 區域 内의 土地의 合理的 이용에 관한 계획의 設定 및 그 실시에 관한 조합원에 대한 助言

(10) 組合員이 建築協定을 締結하는 경우의 周旋

(11) 前各號의 사업에 附帶하는 사업

② 商店街組合은 前項 第3號의 규정에 의해 締結하는 火災에 의해 財產에 발생하는 손해를 防우기 위한 共濟契約에 있어서는 共濟契約者 1인에 대한 共濟金額의 總額이 50萬원을 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③ 商店街組合은 組合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組合員이외의 자에 第1項 第1號내지 第5號의 사업(이들 사업에 附帶하는 同項 第11號의 사업을 포함)을 이용시킬 수가 있다.

但 事業年度에 있어서의 組合員 이외의 자의 이들 사업의 利用分量의 總額은 그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組合員의 이들 사업의 利用分量의 總額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第16條 (倉庫證券의 發行) ① 保管事業을 行하는 商店街組合은 交通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서 組合員의 任置物에 대해서 倉庫證券을 發行할 수 있다.

② 前項의 칙가를 받은 商店街組合은 조합원인 任置人의 請求에 의해 任置物의 倉庫證券을 交付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第1項의 倉庫證券에 대해서는 商法 第155條 내지 第168條(第11章 倉庫業)의 규정을 準用한다.

第17條 (同前)

前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은 商店街組合이 작성하는 倉庫證券에는 그 商店街組合의 名稱을 冠한 倉庫證券이란 文字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18條 (同前)

① 商店街組合이 倉庫證券을 發付한 任置物의 보관기간은 任置日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前項의 任置物의 보관기간은 6개월을 限度로 更新할 수 있다.

但 更新時의 所持人이 組合員이 아닐 때에는 組合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第19條 (商品券의 發行) ① 商店街組合이 商品券을 發行하였을 때에는 組合員은 이에 대해서 그 取扱商品에 대해서 交換의 의무를 진다.

② 商店街組合이 商品券을 發行한 경우 그 組合員이 商品券의 交換을 하여주지 못할 때 또는 그 교환을 中止하였을 때는 그 商店街組合은 商品券의 소유자에 대해서 券面에 표

시한 금액을 한도로返濟의 책임을 진다.

③ 第1項의 상품권에 대해서는商品券法第1條 내지第21條의 규정을準用한다.

第3章 商業組合

第1節 通則

第20條 (中小商業者의 定義) 이 法에서 中小商業者라 함은 資本의 額 또는 出資의 총액이 1千萬원 以下이며 常時 使用하는 종업원의 수가 50人 以下의 會社 및 個人으로서 商業에 속하는 事業을 主된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第21條 (種類) 商業組合의 종류는 다음各號와 같다.

(1) 商業組合(以下‘組合’이라 한다)

(2) 商業組合聯合會(以下‘聯合會’라 한다)

第22條 (人格과 住所) ① 組合 및 聯合會는 法人으로 한다.

② 組合 및 聯合會의 住所는 각각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第23條 (名稱使用과 類似名稱使用禁止) ① 組合 또는 聯合會는 그 名稱 중에 각각 다음의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

(1) 組合은 固有名 또는 固有名과 業種을 冠한 商業組合

[註] 組合의 商店看板에는 이대로 사용하지 아니해도 無妨하다.(例; ○○○連鎖店)

(2) 聯合會는 商業組合聯合會

②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 또는 聯合會가 아니면 前項의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組合 또는 聯合會의 名稱에 대해서는 商法 第22條(商號登記의 效力) 및 第23條(主體를 誤認시킬 商號의 使用禁止)의 규정을 準用한다.

第24條 (區域) ① 組合은 行政區域인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를 業務區域으로 한다.

그러나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그 이상의 業務區域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註] ① 將來 商業組合이 機會가 成熟하여 『中小企業基本法』의 취지대로 中小企業協同組合의 一員이 될 때는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傘下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업조합은 聯合會까지만 두고 中央會는 없애고 聯合會가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와 같은 役割을 하도록 하였다.

② 商業組合의 特殊性에 비추어 階層組織을 복잡한 3 단계로 하지 않고 2 단계로 하

였다. 段階가 많으면 오히려 商人們에게 不利한 現象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第25條 (組合員의 資格) ① 第20條에 규정한 자로서 組合의 區域 내에서 同一業種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該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다.

② 業種의 수와 類別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註] 업종은 食料品, 衣類品, 醫藥品, 鐵物등의 方式 또는 다른 적당한 分類方式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③ 商店街組合員은 商業組合의組合員이 될 수 없다.

④ 組合은 特別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0條에 규정한 이외의 자를組合員으로 할 수 있다.

第26條 (組合의 設立) 組合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업종 중 1개 업종을 주로 하여 設立할 수 있다. 但 그組合의組合員은 主務官廳의 허가를 얻어 다른 업종의商品도附隨적으로 取扱할 수 있다.

第2節 事 業

第27條 (商業組合의事業) ① 商業組合은 다음 事業의 全部 또는一部를 行할 수 있다.

(1) 販賣, 加工, 保管, 輸送, 檢查등 공동사업의 주선 및 공동시설의 관리

(2) 組合員 간의 사업조정에 관한企劃 및 조정

(3) 組合員에 대한 事業資金의 貸付의 주선과組合自體事業을 위한 資金의 借入

(4) 組合員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와 기술의改善向上 또는 教育, 情報의 제공에 관한 시설

(5) 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團體契約의 締結

(6) 組合員의 福利厚生에 관한 시설

(7) 國家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8) 기타 附帶事業

② 前項各號의 사업 중 第1號의 一部와 第2號 내지 第4號의 사업은組合의 必須事業으로 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組合員 이외의者에게 그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但組合員 이외의者의 事業利用分量의 총액은 그사업년도의 조합 이용분량의 총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④ 組合은 貿易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판매하는 제품의 수출을 할 수 있다.

第28條 (團體的契約) ① 前條 第1項 第5號의 團體的 契約은 미리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團體的 契約임을 明記한 書面으로서 하여야 한다.

② 團體的 契約은 직접 組合員에 대하여 效力を 가진다.

③ 組合員은 團體的 契約에 위반한 内容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政府, 公共團體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는 그 物品購買에 있어서 組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29條 (商法의 準用) 組合의 사업에 관하여는 本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 중 商行爲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

第4章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에 대한 通則

第1節 組合員

第30條 (加入의 節次) ① 商店街組合 및 商業組合(以下 兩組合을 「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하고자 하는 者는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入에 대한 組合의 承認을 얻어 引受出資座數에 對한 金額의 納入과 組合이 加入金을 徵收할 것을 정한 境遇에는 그 支給을 마친 때 또는 組合의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繼한 때에 組合員이 된다.

②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자가 組合에 加入하고자 할 때에는 組合은 정당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거나 또는 現在의 組合員의 加入當時에 불인 것보다 不利한 條件을 불여서는 아니된다.

第31條 (出資) ① 組合員은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座 以上的 出資를 하여야 한다.

② 出資 1座의 金額은 均一하여야 한다.

③ 1組合員의 出資座數는 出資總座數의 100 분의 20 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組合員은 出資金의 納入에 관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하지 못한다.

⑤ 組合員은 事業을 休止한 때, 事業의 一部를 廢止한 때 또는 其他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年度 末에 한하여 그 出資座數를 減少할 수 있다.

⑥ 前項의 境遇에는 第3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 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額을 限度로 한한다.

第32條 (議決權과 選舉權) ① 組合員은 각각 1개의 議決權과 選舉權을 가진다.

② 組合員은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通知한 事項에 관하여 書面이나 代理人으로 議決權 또는 選舉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③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權 또는 選舉權을 行使하는 자는 出席者로 본다.

④ 代理人이 代理할 수 있는 組合員의 數는 1인에 限한다.

⑤ 代理人은 代理權을 증명하는 書面을 組合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33條 (經費의 賦課) ① 組合員은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에게 經費를 賦課 할 수 있다.

② 組合員은 前項의 經費의 支給에 관하여 相計로써 組合에 對抗하지 못한다.

第34條 (使用料와 手數料) 組合은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使用料와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35條 (組合員의 相續) ① 死亡한 組合員의 相續人으로서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가 組合에 對하여 定款으로 정하는 期間 내에 加入申請을 할 때에는 第30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續 開始된 때에 組合員이 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는 相續人인 組合員은 被相續人의 持分에 관하여 死亡한 組合員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死亡한 組合員의 相續인이 數人인 때에는 그 數人의 相續人們이 選定한 1인의 相續人에 限하여 前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36條 (持分의 讓渡) ① 組合員은 組合의 承認 없이는 그 持分을 讓渡하지 못한다.

② 組合員이 아닌 者가 持分을 讓受하려고 할 때에는 加入의 例에 따라야 한다.

③ 持分의 讓受人은 그 持分에 관하여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④ 組合員은 持分을 共有하지 못한다.

第37條 (任意脫退) ① 組合員은 20일 전에 豫告하고 事業年度 末에 限하여 脫退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豫告期間은 定款으로 1년을 넘지 아니하는 限度 내에서 延長할 수 있다.

第38條 (法定脫退) ① 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脫退한다.

(1) 組合員이 될 資格의 褒失

(2) 死亡 또는 解散

(3) 除名

(4) 破產의宣告

② 前項 第 3號의 除名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 대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

처 行한다.

- (1) 長期間에 걸쳐 組合의 施設을 利用하지 아니 하는 組合員
- (2) 出資의 納入, 經費의 負擔, 其他組合에 대한 義務를 懈怠한 組合員
- (3) 其他 定款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組合員
- ③ 前項의 경우에는 組合은 總會 開催日 10일 前에 當該 組合員에게 除名事由를 通知하고 總會에서 辯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除名은 除外한 組合員에 대하여 그 趣旨를 通知하지 아니하면 그 組合員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 第39條** (脫退者の 持分의 還拂과 그 停止) ① 組合員은 脱退 時에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해 그 持分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戻를 請求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持分은 脱退할 事業年度 末의 組合財產에 의하여 정한다.
- ③ 前項의 持分을 計算함에 있어서 組合의 財產으로 그 債務를 完濟하지 못할 때에는 組合은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組合員에 대하여 그가 負擔하여야 할 損失額의 納入을 請求할 수 있다.
- ④ 組合은 脱退한 組合員이 組合에 대한 債務를 完濟할 때까지 그 持分의 還拂을 停止할 수 있다.
- ⑤ 第1項과 第3項의 請求權은 脱退한 날로부터 2년간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다.

第2節 設 立

- 第40條** (發起人) 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 5인 以上이 發起人이 되어야 한다.

- 第41條** (創立總會) ① 發起人은 定款을 作成하고 이를 會議의 日時 場所와 함께 公告하고 創立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 ② 前項의 公告는 적어도 會議開催日의 2週 전에 行하여야 한다.
- ③ 發起人이 作成한 定款의 採擇 또는 그 修正과 事業計劃의 設定 其他組合의 設立에 필요한 事項의決定은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④ 創立總會의 議決은 組合員이 될 資格을 가진 者로서 組合設立에 同意한 者의 過半數以上的 出席과 出席者的 3분의 2 以上的 賛成으로 行한다.

- 第42條** (定款記載事項) ① 組合의 定款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1) 目的
- (2) 名稱
- (3) 業務區域
- (4) 事業(商人組合에 限함)
- (5) 事業所의 所在地
- (6) 組合員이 될 資格
- (7) 組合員의 加入과 脫退
- (8) 任員의 定數와 그 選任
- (9) 出資 1座의 金額과 그 收入方法
- (10) 經費의 負擔
- (11) 事業年度
- (12) 剩餘金의 處分과 損失의 處理
- (13) 準備金의 額數와 그 積立方法
- (14) 存立期間 또는 解散事由
- (15) 公告方法

② 組合의 定款에는 前項의 事項 외에 現物出資를 하는 者를 정한 때에는 그 姓名과 出資目的인 財產의 種類, 數量, 價格과 이에 대하여 賦與하는 出資座數를 組合의 成立後에 讓受할 財產이 있을 때에는 그 財產의 種類, 數量, 價格과 讓渡人의 姓名을 記載하여야 한다.

第43條 (規約記載事項) 다음 事項에 관하여는 定款으로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規約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總會에 관한 規定
- ② 業務의 執行과 會計에 관한 事項
- ③ 任員에 관한 事項
- ④ 組合員에 관한 事項
- ⑤ 使用料와 手數料의 徵收에 관한 事項
- ⑥ 其他 必要한 事項

第44條 (議事錄) ① 創立總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와 議決事項을 記載하고 議長과 發起人全員이 署名하여야 한다.

第45條 (設立認可) ① 發起人은 創立總會終了後 遲滯없이 定款, 事業計劃, 任員의 姓名

과 住所 其他 必要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主務官廳에 提出하여 認可를 얻어야 한다.

② 主務官廳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申請이 있을때에는 遲滯없이 認可 또는 不認可의 處分을하고 當該發起人에 通知하여야 한다.

③ 主務官廳은 不認可의 通知를 할 때에는 그 理由도 함께 通知하여야 한다.

④ 發起人 중 前條 第2項의 議事錄에 署名을 拒否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發起人의 過半數 以上이 設立認可申請書에 그 事由書를 添付하여 設立認可를 申請할 수 있다.

第46條 (理事長에의 事務引繼) 發起人은 前條의 認可를 얻은 때에는 그 認可를 얻은날로
부터 2週日 以內에 그 事務를 理事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47條 (出資의 第1回 納入) ① 理事長은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를 引受한 때에는
事務를 引受한 날로부터 3週日 以內에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을 시켜야 한다.

② 前項의 第1回 納入金額은 出資 1座에 대하여 그 金額의 2분의 1 以上이어야 한다.
③ 現物出資者는 第1回의 納入期日에 出資의 目的인 財產의 全部를 紿付하여야 한다.

第3節 機 關

第48條 (總會) ① 定期總會는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事業年度마다 1回 이상을
召集하여야 한다.

② 臨時總會는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 언제든지 召集할 수
있다.

第49條 (總會의 召集) ① 總會는 理事長이 召集한다.

② 組合員이 總組合員 4분의 1 以上的 同意를 얻어 會議의 目的 事項을 提示하여 總會
召集을 請求한 때에는 理事長은 請求가 있는 날로부터 2週間 내에 臨時總會를 召集하
여야 한다.

③ 前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한 組合員은 前項의 請求를 한 날로부터 2週間 내에 理
事長이 總會를 召集하지 아니할 때에는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總會를 召集할 수 있
다.

④ 前項의 경우에는 監事が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50條 (召集節次) 總會의 召集은 會議日의 7日前에 會議의 目的事項을 明示하여 定款
에서 정한 方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第51條 (總會의 議決事項) ① 다음 各號의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1) 定款의 變更
- (2) 規約의 制定, 變更 또는 廢止
- (3) 每事業年度의 收支豫算과 事業計劃의 設定 또는 變更
- (4) 決算의 承認
- (5) 經費의 賦課와 그 徵收方法
- (6) 組合員의 除名
- (7) 組合의 解散, 合併 또는 分割
- (8) 任員의 選出과 解任
- (9) 準備金의 處分
- (10) 其他 定款으로 定하는 事項

② 定款의 變更是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 第52條 (總會의 議決方法) ① 總會의 議事는 이法이나 定款 또는 規約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總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② 總會의 議長은 理事長이 되며 理事長이 有故時에는 總會에서 選任된 者가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③ 總會에서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通知한 事項에 한하여 議決할 수 있다.
但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例外로 한다.
- ④ 總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事의 경과와 議事事項을 記載하고 議長과 總會에서 指定한 理事 2名 이상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⑤ 組合과 組合員의 利益이 相反될 때에는 그 組合員은 當該事項의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第53條 (特別議事事項) 다음 事項은 總組合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분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① 定款의 變更
- ② 組合員의 除名
- ③ 組合의 解散, 合併 또는 分割

第54條 (任員) ① 組合에는 任員으로서 理事長 1인, 理事 2人以上, 常務理事 1인과 監事 2人 이내를 둔다.

② 理事長은 總會에서 組合員 중에서 無記名 投票로 選出하여 理事와 監事는 定款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중에서 選出한다.

③ 常務理事는 總會의 同意를 얻어 理事長이 任命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중에서 任命할 수 있다.

第55條 (任員資格의 制限) ① 다음 각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組合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

(2) 禁治產者 및 限定治產者와 破產者 또는 公民權이 剝奪된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者

(3)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② 前項의 事由가 發見되거나 發生한때에는 그 任員은 自然退職된다.

③ 前項에 의하여 退職한 任員이 退職 前에 關與한 行爲는 그 効力を 損失하지 아니한다.

第56條 (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定款으로 定하되 그 期間은 2年以内로 한다.
但 設立當時의 任員은 1年以内로 한다.

② 任員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缺員의 事由가 發生한 날로 부터 2月내에 補選하여야 한다.

第57條 (理事會) ① 組合의 業務의 執行은 理事會가 決定한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 理事와 常務理事로서 構成한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⑤ 理事는 定款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⑥ 理事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 議長과 理事會가 指名한 理事 2人이 상이 署名하여야 한다.

第58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① 組合員이 되고자하는 者의 資格審查

② 起債와 그 債還

③ 總會에 附議할 事項

④ 總會의 委任事項과 組合의 業務執行에 관한 事項

⑤ 聯合會 會長候補者 추천에 관한 事項

⑥ 其他 定款으로 정한 事項

第59條 (理事長의 職務) 理事長은 組合을 以表하고 組合의 業務를 統轄한다.

第60條 (常務理事의 職務) 常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61條 (監事의 職務) ① 監事는 組合의 財產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查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監事는 組合의 財產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관하여 부정한 事實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主務官廳과 聯合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③ 組合이 理事長 또는 理事와 契約을 할 때에는 監事が 組合을 代表한다. 組合과 理事長 또는 理事 間의 訴訟에 관하여도 같다.

第62條 (監事의 責任) 監事が 그 任務를 懶怠한 때에는 『民法』第6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3條 (任員의 兼職禁止), 任員은 組合의 他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은 경우에는例外로 한다.

② 組合의 常務理事는 組合 외의 他職도 겸하지 못한다.

第64條 (定款 其他書類 備置와 閱覽) ① 理事長은 定款, 規約과 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錄, 組合員名簿를 主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 組合員名簿에는 各組合員에 관하여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2) 加入한 년, 월, 일

(3) 出資座數, 納入畢金額과 納入 년, 월, 일

(4) 從業員數, 資產總額, 生產施設, 生產能力 및 生產實績 其他 必要한 事項

③ 組合員과 組合의 債權者는 언제든지 理事長에 대하여 第1項에 書類의 閱覽 또는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

④ 理事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拒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5條 (決算關係書類備置와 閱覽) ① 理事長은 定期總會의 會議日의 7日前에 事業報告書, 財產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와 剩餘金處分案 또는 損失金處理案을 作成하여 적어도 그 1部씩을 監查에게 提出하고 이를 主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 理事長은 前項의 書類에 監事의 意見書를 添附하여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組合의 債權者는 언제든지 理事長에 대하여 第1項의 書類의 閱覽 또는 寫本을 請求 할 수 있다.

④ 理事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第66條 (會計帳簿등의 閱覽) ① 組合員은 總組合員의 5분의 1 이상 同意를 얻어 언제든지 理事長에 대하여 會計帳簿과 書類의 閱覽 또는 寫本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理事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第67條 (任員改選의 請求) ① 組合員은 總組合員 5분의 1 以上의 連署로 定款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의 改選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 總會에서 總組合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組合員 3分의 2 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한 때에는 當該任員은 當然히 解任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은 總會의 會議日의 7日前에 當該任員에게 改善事由를 通知하고 總會에서 辯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4節 會 計

第68條 (事業年度) ① 組合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 會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이외의 필요한 事項은 規約으로 정한다.

第69條 (出資 1座金額의 減少) ① 組合은 出資 1座金額의 減少를 議決한 때에는 議決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 財產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 組合은 前項의 期間内에 債權者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公告함과 同時に 이미 알고 있는 債權者에 대하여는 個別的으로 催告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異議申請의 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第70條 (異議申請) ① 債權者が 前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内에 異議를 申請하지 아니한 때에는 出資 1座의 金額의 減少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② 債權者が 異議를 申請한 때에는 組合은 債務를 辨濟하거나 相當한 捨保를 提供하여야 한다.

第71條 (準備金과 移越金) ① 組合은 定款으로 정하는 金額에 達할 때까지 每事業年度의 剩餘金의 10분의 1 以上을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② 前項의 準備金은 出資金 總額의 2분의 1以上에 달할때 까지 積立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의 準備金은 損失의 補填에 充當하는 경우 이외에는 處分하지 못한다.
- ④ 組合은 事業의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每事業年度의 剩餘金中에 2분의 1以上을 다음 事業年度에 移越하여야 한다.

第72條 (剩餘金의 處分) ① 組合은 損失을 補填하고 前條의 準備金과 移越金을 控除한 후가 아니면 剩餘金의 配當을 하지 못한다.

② 剩餘金의 配當은 定款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出資額 및 組合事業 利用分量에 比例하여 行하여야 한다.

第73條 (持分取得의 禁止) 組合은 組合員의 持分을 取得하거나 또는 質權을 目的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5節 解散과 清算

第74條 (解散) ① 組合은 다음 事由로 인하여 解散한다.

- (1) 總會의 決議
- (2) 組合의 合併 또는 分割
- (3) 組合의 破產
- (4) 定款으로 定하는 存立期間의 滿了 또는 解散事由의 發生
- (5) 主務官廳의 解散命令

② 組合은 前項 第1號, 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때에는 解散한 날로부터 2週間內에 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75條 (合併의 節次) ① 組合이 合併할 때에는 미리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② 組合의 合併에는 第69條와 第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③ 組合의 合併은 主務官廳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第76條 (合併時의 設立委員) ① 合併에 의하여 組合을 設立함에는 各組合의 總會에서 組合員 중에서 選任한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定款을 作成하고 任員을 選任하여 其他設立에 必要한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任期는 다음 定期總會日까지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委員의 選任方法에 관하여는 第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7條 (合併의 時期와 效果) ① 組合의 合併은 合併後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併에 의하여 成立하는 組合이 그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合併登記를 함으로써 效力を 發生한

다.

② 合併後 存續하는 組合 또는 合併에 의하여 成立한 組合은 合併에 의하여 消滅한 組合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第78條 (分割) 組合이 分割하고자 할 때에는 分割후 設立될 組合이 承繼하여야 할 權利義務의 범위를 總會에서 議決하여야 한다.

第79條 (民法의 準用) 組合의 解散과 清算에 관하여 이 法이 規定한 事項外는 民法規定中 解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商店街組合聯合會 및 商業組合聯合會에 대한 通則

第1節 會 員

第80條 (會員) 商店街組合聯合會와 商業組合聯合會의 會員은 各己定款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全國의 商店街組合과 商業組合으로 한다.

第81條 (加入과 脫退) ① 前條에 規定한 者는 聯合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會員이 된다.

② 會員은 聯合會의 解散에 의하여 脫退된다.

第82條 (準用規定) 會員에 관하여는 第32條 내지 第3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組合’을 ‘聯合會’로 ‘組合員’을 ‘會員’으로 한다.

第2節 事 業

第83條 (聯合會의 事業) ① 聯合會는 다음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行할 수가 있다.

(1) 會員組合의 組織 및 事業의 指導 및 連絡.

(2) 販賣, 保管, 運送, 檢查, 其他 聯合會를 直接 또는 間接으로 構成하는 者(以下 ‘所屬員’이라 한다)의 事業에 관한 共同施設.

(3) 所屬員을 위한 商品券의 發行, 割賦購入의 周旋, 其他 販賣方法에 관한 共同事業

(4) 會員에 대한 資金의 貸付(어음의 割引을 包含) 및 會員을 위한 資金의 借入.

(5) 第1號의 事業에 該當하는 것을 除外한 所屬員의 事業에 관한 經營 및 技術의 改善向上 또는 組合事業에 관한 知識의 普及을 꾀하기 위한 教育 및 情報의 提供에 관한

施設.

- (6) 會員組合의 組合員의 事業에 대한 企業診斷.
 - (7) 所屬員 및 그 從業員의 福利厚生에 관한 施設.
 - (8) 會員組合의 組合員의 從業員의 雇傭 및 그의 賃金, 勞動時間, 宿舍등의 勞動條件의 改善에 관한 事業.
 - (9) 會員 및 그들의 事業에 대한 調查研究.
 - (10) 會員의 意見의 綜合公表 및 國會 行政府등에 대한 建議.
 - (11) 會員에 대한 補助金의 交付 또는 交付周旋.
 - (12) 其他 必要한 事業.
- ② 聯合會의 事業에 대하여는 第15條 第2項 및 第3項 및 第16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③ 聯合會는 그 事業을 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定款 또는 規約의 定하는바에 의하여 會員에 대하여 業務 또는 會計에 관하여 報告를 要求하고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④ 聯合會는 每年 1回以上 規約이 定한 바에 의하여 그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組合의 業務와 會計에 관한 事項을 監查하게 하여야 한다.
- ⑤ 聯合會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監查의 결과 是正을 要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그 是正을 命하고, 그 監查의 결과를 主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84條 (事業計劃의 承認) 聯合會는 事業年度開始 6月前에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書를 主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節 設 立

第85條 (發起人) 聯合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80條에 規定한 組合 3個以上이 發起人이 되어야 한다.

第86條 (定款記載事項) 聯合會는 定款에 정하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1) 目 的
- (2) 名 稱
- (3) 事 業
- (4) 事務所의 所在地
- (5) 會員이 될 資格

- (6) 會員의 加入脫退.
- (7) 任員의 定款과 그 選任.
- (8) 經費의 分擔.
- (9) 事業年度.
- (10)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
- (11) 公告方法.

第87條 (規約記載事項) 다음事項에 관하여는 定款에서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規約으로 정할 수 있다.

- (1) 總會에 관한 事項.
- (2) 業務의 執行과 會計에 관한 事項.
- (3) 任員에 관한 事項.
- (4) 會員에 관한 事項.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88條 (準用規定) 聯合會의 設立에 관하여는 第41條 第44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을 準用 한다. 이 경우에는 '組合'을 '聯合會'로, '組合員'을 '會員'으로, '理事長'을 '會長'으로 한다.

第4節 機 關

第89條 (任員) 聯合會는 任員으로 會長 1인, 理事長 1인, 理事 2인以上, 專務理事 1인과 監事 2인以內를 둘 수 있다. 但 聯合會會長은 組合의 理事長을 겸할 수 없다.

- 第90條 (任員의 選任) ① 聯合會會長은 總會에서 會員의 代表者 또는 傘下組合의 理事長 (聯合會 會員)이 추천하는 所屬組合員中에서 無記名投票로 選出한다.
- ② 理事長은 「마아케팅」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중에서 理事會의 추천에 의하여 主義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命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 중에서 任命할 수 있다.
- ③ 專務理事는 理事會의 추천을 얻어 理事長이 任命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 중에서 任命할 수 있다.

- 第91條 (任員의 職務) ① 會長은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會長이 事故로 인하여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總會에 있어서는 總會에서 選出하는 臨時議長이 理事會에 있어서는 理事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② 理事長은 聯合會의 業務를 統理한다.
- ③ 專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聯合會의 業務를 分掌하며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④ 監事는 聯合會의 財產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查하여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92條 (準用規定) 聯合會의 總會 理事會 및 任員에 관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組合의 總會 理事會 및 任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組合'을 '聯合會'로 '組合員'은 '會員'으로 第49條 第 1 項 第 2 項, 第 3 項, 第52條 第 2 項, 第57條 第 3 項, 第59條, 第65條 第 1 項, 第 2 項, 第67條 第 3 項의 理事長은 '會長'으로 하여 第57條 第 2 項의 '理事長·理事와 常務理事'를 '會長·理事長·理事와 專務理事'로 한다. 다만 第58條 第 5 號는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 5 節 會 計

第93條 (會計) 聯合會의 會計에 關하여는 第6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註〕 聯合會의 會計는 組合의 경우와는 달리 緩和해서 規約이나 定款으로 정할 수 있다

第 6 節 解 散 과 清 算

第94條 (解散과 清算) 聯合會의 解散과 清算에 관하여는 組合의 解散과 清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6 章 登 記

第95條 (設立登記) ① 組合은 第47條의 規定에 依하여 出資의 納入이 있는 날로부터 2週間內에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 (1) 目的과 名稱
- (2) 事業區域과 設立認可의 년, 월, 일
- (3) 事務所의 所在地
- (4) 事 業
- (5) 出資 1 座의 金額 및 納入方法과 出資總座數 및 納入畢出資總額
- (6) 存立期間 또는 解散의 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期間 또는 事由
- (7) 任員의 姓名과 住所

(8) 任員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

② 聯合會는 設立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2週間內에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다음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目的과 名稱

(2) 設立認可의 년, 월, 일

(3) 事務所의 所在地

(4) 事 業

(5) 任員의 姓名과 住所

(6) 任員의 代表權을 制限할 때에는 그 制限

第96條 (分事務所設置의 登記) ① 組合 또는 聯合會가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間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內에 前條 1項 또는 第 2項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 主事務所 또는 다른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內에 그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

第97條 (變更登記) ① 第95條 第 1項 또는 第 2項中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2週間內에, 分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95條 第 1項 第 5號의 事項中 出資總座數와 納入畢出資總額의 變更登記는 前項의 規定에 不抱하고 每事業年度末 現在로 事業年度終了後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分事務所의 所在地에서는 4週間內에 하면 된다.

第98條 (登記簿) 各登記所에서는 商店街組合登記簿, 商店街組合聯合會 登記簿, 商業組合聯合會登記簿를 備置한다.

第7章 監 督

第99條 (決算 關係 書類의 提出) 組合 또는 聯合會는 每事業年度 定期總會가 終了한 날로부터 2週間 내에 事業報告書, 財產目錄,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와 剩餘金의 處分 또는 損失金의 處理方法을 記載한 文書를 主務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00條 (報告의 徵收) ① 組合 또는 聯合會는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週間 내에 主務官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1) 總會의 開催와 그 結果

(2) 住所의 變更

(3) 任員의 選任

(4) 規定의 制定 또는 改廢

(5) 團體的 契約의 締結

(6) 組合員 또는 會員의 變動

② 組合은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의 販賣報告書를 主務官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主務官廳은 組合 또는 聯合會의 業務를 適切히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報告를 받을 수 있다.

④ 第1項 第4號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01條 (検査) ① 主務官廳은 組合 또는 聯合會의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이나 또는 定款에 違反되는 협의가 있거나 運營이 顯著하게 不當한 혐의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組合 또는 聯合會로부터 그 業務나 會計에 관하여 必要한 報告를 받거나 또는 그 業務나 會計의 狀況을 檢查할 수 있다.

② 組合員, 會員 또는 代議員은 그 組合이나 聯合會의 業務나 會計가 定款 또는 規約에 違反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總組合員, 總代議員 또는 總會員의 3분의 1以上의 同意를 얻어 文書로 主務官廳에 檢查를 請求할 수 있다.

③ 前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主務官廳은 組合 또는 聯合會의 業務나 會計 狀況을 檢查하여야 한다.

第102條 (行政命令) ① 主務官廳은 組合 또는 聯合會가 다음 각號의 一에 該當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是正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1) 業務나 會計가 法令이나 定款 또는 規約에 違反한 때

(2) 運營이 顯著하게 不當한 때

(3) 正當한 理由 없이 設立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년以上 繼續하여 業務를 停止할 때

② 主務官廳은 組合 또는 聯合會가 前項의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任員의 解任 또는 그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第103條 (事業助成) 政府는 商店街組合 또는 商業組合의 助成을 위한 政府施策을 實施하는 境遇에 聯合會를 통하여 實施한다. 그러나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組合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 第104條 (補助金) ① 主務部長官은 商店街組合 또는 商業組合의 육성을 위하여 聯合會의 運營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여야 한다.
② 主務官廳은 商店街組合 또는 商業組合의 육성을 위하여 그 豫算의 範圍안에서 組合의 運營에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 第105條 (職權委任) 商工部長官은 그 職權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8章 罰則

- 第106條 (罰則) ① 組合 또는 聯合會의 任員이 組合 또는 聯合會의 事業範圍를 離脫하여 貸付하거나 어음 割引을 하거나 혹은 投機去來의 目的으로 그 財產을 處分한 때에는 3年以下の 懲役 또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懲役과 罰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 第107條 (同前) ① 組合 또는 聯合會가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組合의 理事長, 聯合會의 會長 및 理事長을 3년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원 以下의 벌금에 처한다.

② 組合 또는 聯合會의 任員이 第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3년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08條 (同前) 第101條의 규정에 의한 檢查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忌避한 者는 10萬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 第109條 (同前) 組合 또는 聯合會가 第102條의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그任員을 5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第110條 (同前) 다음의 경우에는 組合 또는 聯合會의 發起人, 任員 또는 清算人을 3萬원 以下의 過怠金에 處한다.

- (1) 本法의 가정에 의하여 組合 또는 聯合會가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 (2) 本法에서 정한 登記를 懈怠한 때
- (3) 第2條, 第3條, 第4條, 第30條 第2項, 第38條 第3項, 第50條, 第63條, 第67條 第3項의 규정에 違反한 때

- (4) 第74條 第2項의 규정에 위반한 때
- (5) 第27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위반한 때
- (6) 第48條 第1項(第9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의 규정에 위반한 때
- (7) 第64條, 第65條 (第9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 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記 載를 하거나 또는 正當한 이유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절한 때
- (8) 第66條 第2項(第9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의 규정에 위반하여 正當한 이유 없이 帳簿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절한 때
- (9) 第69條 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公告를懈怠하거나 허위의 公告를 한 때
- (10) 第71條 또는 第72條의 규정에 위반한 때
- (11) 第73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持分을 취득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때
- (12) 第99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 (13) 第100條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14) 第83條 第3項 내지 第5項의 규정에 위반한 때

第111條 (同前) 第99條 및 第102條의 命令을 拒否하거나 기피한 자는 5萬원 以下의 罰 金에 處한다.

第112條 (同前) 第11條 第2項 및 第23條 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組合 또는 聯合會 名稱과 同一한 名稱을 사용한 者는 2萬원 以下의 過怠金에 處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錄

市場規則(1914. 9. 12 總令 136)

改正	1920. 4	總令	38
	1924. 9	總令	51
	1927. 3	總令	16
	1930. 5	總令	53
	1931. 9	總令	109

第1條 (定義) 本令에서 市場이라 함은 左의 각號의 一에 該當하는 것을 말한다.

- (1) 場屋을 設하거나 또는 場屋을 設하지 않더라도 區劃한 地域에서 매일 또는 定期에 多數의 需要者 및 供給者가 來集하여 貨物의 賣買交換을 행하는 장소
- (2) 20人以上의 영업자가 一場屋에서 주로 穀物 食料品의 판매업을 행하는 장소
- (3) 委託을 받고 競賣의 方法에 의하여 貨物의 판매업을 행하는 장소

第2條 (經營主體의 制限) 市場은 公共단체 또는 이에 準한 者가 아니면 이를 경영하지 못한다.

第3條 (設置許可) ① 市場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下의 사항을 記載한 願書를 道知事에게 提出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名稱
 - (2) 位 置
 - (3) 面 積
 - (4) 設 備
 - (5) 開始日 또는 休業日 및 市場의 開閉時刻
 - (6) 去來할 主된 화물의 종류
 - (7) 市, 邑, 面에서 경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使用料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率 및 징수방법
 - (8) 管理方法
 - (9) 設立의 理由
- ② 前項의 願書에는 市場의 設置位置 및 그 부근의 상황을 기재한 도면을添附하여야 한다.

第4條 (開始, 休業届出) ① 市場을 開始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道知事에게 届出하여야 한다.

② 第1條 第3號의 市場으로서 休業日 이외의 休業을 한 때 기타의 市場으로서 1개월以上에 걸친 休業을 한 때에도 또한 前項과 같다.

第5條 (設置許可事項의 變更) 第3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8號에 揭記한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廢止) 市場을 廢止한 때에는 그 事由를 갖추어 遲滯없이 이를 道知事에게 屈出하여야 한다.

第7條 (許可의 取消 移轉命令) 道知事은 公益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3條 第1項 또는 第5條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移轉 기타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8條 (委託販賣의 營業許可) ①委託을 받고 競賣의 方法에 의하여 화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下의 사항을 기재한 願書에 市場經營者의 동의를 얻은 것을 證하는 書面을添付하여 道知事에게 提出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商號 姓名

(2) 資本金額

(3) 營業期間

(4) 營業規程

(5) 營業所의 位置

(6) 貨物의 종류

(7) 1年間의 販賣豫定數量 및 金額

(8) 1年間의 損益豫定計定

② 營業者가 그 營業上 必要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기재한 서면 및 圖面을 前項의 願書에添付하여야 한다.

第9條 (營業規程) 前條의 營業規程에는 下의 사항을 記載하여야 한다.

(1) 貨物의 보관 및 販賣하는 方法에 관한 사항

(2) 仲買人을 둘 때에는 그 資格 및 脫退에 관한 사항

(3) 販賣手數料의 率 및 推尋方法, 委託者에 대한 代金支拂方法 기타 委託에 관한 사항

(4) 營業時間 및 休業日에 관한 사항

(5) 前各號 外 營業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

第10條 (營業期間) 第8條 第1項 第1號의 營業期間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但 申請에 의하여 이를 更新할 수 있다.

第11條 (委託販賣營業의 相續에 의한 承繼) 第8條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營業은 相續에

의하여 이를 계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相續人은 지체없이 이를 道知事에게 届出하여야 한다.

第12條 (委託販賣營業許可의 變更許可) ①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者가 第 1 項 第 3 號, 第 5 條 第 6 號의 事項, 同條 第 2 項의 設備 또는 營業規程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 8 條 第 1 項 第 1 號의 事項을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 届出하여야 한다.

第13條 (營業의 休止制限)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있는 境遇를 除外하고 休業日 以外에 그 營業을 休止하지 못한다.

第14條 (販賣의 委託拒絕制限)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者는 營業規定에 의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그 營業 貨物의 販賣委託을 拒絕하지 못한다.

第15條 (委託販賣營業開始, 廢止, 休止)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開始 또는 廢止하거나 休業日 以外에 休止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道知事에게 届出하여야 한다. 但 營業休止의 境遇에는 그 事由를 届出 記載하여야 한다.

第16條 (検査) 道知事 또는 警察署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者로 하여금 營業의 狀況 및 出納計算의 報告를 하거나 이에 관한 書類, 帳簿의 檢查를 할 수 있다.

第17條 ① (委託販賣許可의 取消, 停止, 移轉命令)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를 받은 날로 부터 6 日內에 營業開始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營業休止 1 월을 넘을 때에는 營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② 道知事は 公益上 必要할 때에는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또는 營業의 停止, 營業所의 位置의 移轉 其他 適當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8條 (無許可 營業等에 대한 罰) 在의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1년 以下의懲役, 禁錮 또는 2 百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市場을 設置한 때

(2)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 8 條에 規定하는 營業을 하거나 또는 不實한 申告를 하여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때

(3)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營業者가 營業所로서 許可를 받은 市場外에서 그 營業을 한 때

(4) 第13條 혹은 第14條의 規定 또는 第17條의 命令에 違反한 때

第19條 (許可條件, 營業規程等 違反에 대한 罰) 第 8 條의 許可를 받은 者가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할 때에는 2百圓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 (1) 第12條 第1項의 規程에 違反하거나 또는 不實한 申告를 하여 第12條 第1項의 許可를 받을 때
- (2) 許可의 條件 또는 營業規程에 違反한 때
- (3) 第16條에 規定하는 檢查를 拒否하거나 또는 報告에 不實한 記載를 하든가 혹은 事實을 隱蔽한 때
- (4) 營業에 關한 書類, 帳簿에 不正한 記載를 하거나 또는 故意로 필요한 事實을 記載하지 아니한 때

第21條 (警察官의 命令에 違反한 罪) 第18條에 依한 警察官의 命令에 違反한 者는 抱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第22條 (書類届出怠慢에 대한 過料) 第11條, 第12條 第2項 또는 第15條에 規定하는 届出을 怠慢히 한 者는 科料에 處한다.

第23條 (雙罰規定) ① 法人の 代表者 또는 그 雇人 其他の 從業者가 法人の 業務에 關하여 本條에 規定하는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罰則을 法人에 適用한다.

② 法人을 處罪할 境遇에는 法人の 代表者를 被告人으로 한다.

第24條 (同前) 第8條에 規定하는 營業者는 그 代理人, 戶主, 家族, 同居者, 雇人, 其他の 從業者로서 그 業務에 關하여 本條에 規定한 罪를 犯한 때에는 自己의 指揮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理由로써 그 處罰을 면하지 못한다.

第24條2 (本令適用除外) 本令은 주로 쌀의 賣買去來를 하는 市場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 한다.

附 則(省略)